덴마크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5
외교관계 / 7
주한주재국기관 / 8
한국과의 주요이슈 / 9

II. 경제

경제정책 / 10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1
주요 산업 동향 / 13
정보조사 자료원 / 16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18
무역통계 / 19
투자통계 / 21

Ⅳ. 출장가이드

기후 / 23
시차.근무시간 / 24
도량형 / 25
출입국.비자 / 26
환율.환전 / 27
물가정보 / 28
교통.통신 / 30
호텔.식당 / 34
관공서 관행 / 39
공휴일 / 39
여행시 유의사항 / 40
유용한 연락처 / 42
관광명소 / 45

Ⅴ.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9
수입규제제도 / 49
관세제도 / 50
주요인증제도 / 50
지적재산권 / 51
소비자보호제도 / 52
교역관련 국가기관 / 53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6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7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7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59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2
운송 / 62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3
유형별 분쟁사례 / 6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3**
우리기업 투자동향 / **65**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5**
투자인센티브 / **67**
타당성조사 / **69**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0**
입지선정 / **74**
공장 설립 / **75**
투자관련 정부기관 / **75**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6**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78**
조세제도 / **83**
외환관리 / **87**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8**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덴마크 (The Kingdom of Denmark)
위 치	북위 54° 34' 부터 57° 까지, 동경 8° 5' 부터 15° 12' 까지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592 개 섬으로 구성)
면 적	43,098 ㎢ (한반도의 1/5)
기 후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함 [평균기온: 0.4℃(2 월), 16.5℃(7 월)] 연평균 강우량은 664㎜ 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60 일
수 도	코펜하겐(인구 50 만명. 수도권 포함 137 만명)
인 구	542 만명
주요도시	Aarhus(29 만명), Odense(18 만명), Aalborg(16 만명) 등
민족(인종)	전체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언 어	(공용어)덴마크어 / (상용어)덴마크어, 영어, 독일어
종 교	덴마크 루터복음교[87%], 기타(카톨릭, 침례교, 유대교)[12%]
헌법제정일	1849. 6. 5 일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국가원수(실권자)	H.M.Queen Margrethe II (국가원수), Mr.Anders Fogh Rasmussen (총리)
입 법 부	단원제 (총 179 석, 자치령 4 석포함)
정 당	[여당] 자유당(Liberal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최대야당]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기타정당] 덴마크 인민당, 사회 국민당, 중도 민주당, 좌파 연합당, 기독 국민당, 진보당
정부성향	우파 연합정당

나. 경제지표 (2005 년 기준)

GDP	U$2,584 억
실질경제성장률	3.0%
1 인당 GDP	U$47,695
실업률	5.7% (평균)
물가상승률	1.8% (평균)
화폐단위	Danish Kroner (DKR)
환 율	U$ 1=DKK6.0034 (평균)
외 채	U$140 억
외환보유고	U$342 억
산업구조	공공 서비스(26.4%), 무역 운송 통신(23.8%), 금융(20.3%), 광공업 에너지(22.0%), 건설업(4.6%), 농수산업(2.8%)
교역규모	상품수출(U$838 억), 수입(U$745 억)
교 역 품	수출 : 돈육 및 육가공품, 의약품, 원유, 모피,가구, 무선통신기기 수입 :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일반기계, 통신기기

다. 한-덴마크 관계

체결협정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60), 사증면제 협정('69), 개발 차관 협정('69), 이중과세 방지협정('77), 해운 협정('80), 재입국 사증 면제협정(' 87), 투자보장협정('88)
교역규모(2005 년)	620 백만 불 (수출), 559 백만 불 (수입)
교 역 품	수출: 선박, 자동차, 의류, 컴퓨터,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수입: 돈육, 닭고기, 발전기, 냉난방기, 기계요소, 의약품 등
투자교류	- 덴마크기업 투자유치: 59건 167백만 불(2006년 10월말 누계 기준) - 주요 대한 투자기업: 노보자임 코리아(주), 노보노르디스크 제약(주), 롤런즈 코리아(주), 댄포스마린 시스템즈(주), 댄포스(주), 앤비퍼스트(Bioscan A/S), 유니스테프 코리아, 헴펠 코리아 등 - 우리나라의 투자진출: 6건 1,704천불(2006년 9월말 누계기준) - 주요진출기업: Cell Biotech, STX 엔파코, 두산중공업, 대한 항공
교 민	약 250 여명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 조직

1) 행정부

덴마크는 1849 년 6 월 자유민주주의 헌법채택으로 입헌군주국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01 년부터 의회 민주제도(내각책임제)가 시작되었으나 법적으로는 현행 헌법이 채택된 1953 년 6 월 이후부터이다. 헌법상 3 권 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형식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국가원수는 1972 년 1 월 15 일 즉위한 QUEEN MARGRETHE II 이며 현재의 내각은 2005.2.8 일의 총선거에 의해 자유당, 보수당 등의 우파 정당연립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수상은 자유당의 Anders Fogh Rassumussen 이다.

2) 사법부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2 개 고등법원(HIGH COURT), 104 개 하급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 심 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법원인 해양.상업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과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LABOR COURT),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Ombudsman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 옴부스만 (Ombudsman: 국정 민원조사관)

덴마크를 비롯한 북구제국에만 있는 옴부스만은 법률, 행정 등 국정 전반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법적근거
- 1753년 개정헌법 제 55조는 의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가의 행정 및 군사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옴부스만 임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 후 옴부스만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시 1명으로 족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1955년 초대 옴부스만 이래 1명씩 임명하고 있다.

○ 임명 및 지위
- 옴부스만은 총선 후 의회에서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며 의회가 불신임하면 해임된다. 그리고 옴부스만 산하에 조사관 및 사무요원 등 보조기관을 둘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있어 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의회의 동의 없이 여타의 공, 사 직책을 담당할 수 없다.

○ 활동영역 및 권한
-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이 옴부스만의 조사대상이 된다. (단, 사법부와 사법부 관리 및 판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회의 교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됨)
- 개인은 누구든지 옴부스만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관청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상급기관의 최종결정이 난 후에 가능), 옴부스만은 개인의 소원이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인의 소원에 대해서도 옴부스만은 반드시 조사의무는 없으며 사전심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 할 수 있음)
- 조사대상에 지목된 정부기관 또는 공무 원은 옴부스만의 조사활동에 자료 제출,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옴부스만은 각료(또는 전직각료)의 직무상 행위가 민. 형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의회에 권고하며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법 또는 불공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검사에게 조사 및 기소를 지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징계를 지시할 수 있다.
- 옴부스만은 법률 또는 행정규정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
- 옴부스만은 매년 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3) 의회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총 179 석의 단원제로 운영되며 175 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나머지 4 석은 자치령인 Greenland 및 Faroe 제도에서 각각 2 명식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4 년으로 정부는 임기 종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수상의 불신임 가결, 예산안 등 정부 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권 및 정부 감독권을 가지나,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투표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동 법안은 부결된다. 현 국회의장은 자유당의 Mr. Christian Mejdahl 이며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 수에 따라 4 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나. 정치제도

1) 선거제도

전국을 103 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총선을 실시하며 총 175 개 의석 중 135 개 의석은 지역 대표로, 나머지 40 석은 정당 별 득표비율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그리고 의원의 임기는 4 년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 및 시의회로 구분되며 전국 14 개 주와 271 개 시에서 205 명의 주 의원과 2,520 명의 시 의원을 4 년 임기로 선출한다.

18 세 이상 덴마크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 3 년 이상의 덴마크 거주 시 지방 선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선거당일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되며 09:00 부터 20:00 까지 선거가 실시되고 선거당일도 휴일이 아니다. 최근의 총선은 2005 년 2 월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자유당, 보수당을 포함한 우파 연합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1953 년 헌법개정에 따른 비례대표제 채택 후 다수의 정당이 난립하여 특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연립내각 구성이 계속되고 있다. 2005 년 2 월 선거에서는 2001 년에 이어 우파연합이 집권하였다.

□ 정당현황

○ 사회민주당 (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1871년 창당되었으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과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독점기업의 국영화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으며, 당수는 Ms. Helle Thorning-Schmidt이다.

○ 사회주의인민당 (SF: Socialist People's Party) 1959년 전 공산당의 의장인 Askel Larsen에 의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창당되었으며 급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r. Villy Soevndal 이다.

○ 급진자유당 (R: Social Liberal Party) 1905년 창당되었으며 당원은 주로 소지주, 지식인 계층이며 국제적인 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 노동자의 기업 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 국가개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국가통제, 사기업화 등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s. Marianne Jelved이다.

○ 통일당 (좌파연합당 - United List) 종전의 Communist Partym Left Socialist Party 및 Worker's Party의 연합에 의해 창당 되었으며 당수는 Mr. Soeren Soendergaard이다.

○ 자유당 (V: Liberal Party) 1880년 창당되었으며 주요 지지기반은 농민이며 최근 농촌 및 중소도시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업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권력 개입,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다. 당수는 현재 수상인 Mr. Anders Fogh Rasmussen 이다.

○ 보수당 (K: Conversative People's Party) 1916년 창당되었으며 자유로운 국민발안, 사유재산 유지, 경제.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국가의 통제권의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다. 당수는 Mr. Bendt Bendtsen 이다.

○ 기독민주당 (KR.F: Christian Democrats Party) 1970년 창당,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당수가 없다.

○ 덴마크 인민당 (Danish Peoples Party) 1995년 창당되었으며 정강은 진보당과 유사하며 외국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EU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당수는 Ms. Pia Kjaersgaard이다.

2005년 총선결과 정당별 의석수

정당	의석수		증감	소계
	2001	2005		
자유당	56	52	-4	95
보수당	16	19	+3	
덴마크 인민당	22	24	+2	
사회민주당	52	47	-5	80
사회자유당	9	16	+7	
사회주의 민주당	12	11	-1	
좌파 연합당	4	6	+2	
기독 민주당	4	0	-4	
그린랜드	2	2	-	2
페로 아일랜드	2	2	-	2
합계	179	179	-	179

3. 주요 인사

가. 국가원수

ㅇ 직 위 : 국 왕
ㅇ 성 명 : H. M. Queen Margrethe II
ㅇ 즉위일 : 1972년 1월 15일

ㅇ 약 력
- 1940.4.16일 코펜하겐 출생
- 1967.6.10일 프랑스의 Henri-Marie-Jean-Andre와 결혼 2남을 둠

나. 최고 실권자

ㅇ 직 위 : 수상
ㅇ 성 명 : Anders Fogh Rasmussen
ㅇ 취임일 : 2001년 11월 28일(2005년 총선을 통해 재 집권)

□ 인적사항

- 성명 : Anders Fogh Rasmussen (애너스 포 라스무슨)
- 생년월일 : 1953년 1월 26일

□ 학 력

- 1978년 Aarhus(오후스) 대학교 석사 (경제학)

□ 사회 경력

- 1978-87년 덴마아크 중소기업연맹 (Danish Fed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자문관 (consultant)
- 1996년-2001 덴마크중앙은행 이사

□ 정치 경력

- 1974-76년 자유당 청년조직 전국위원장
- 1973-78년 자유당 집행위원회 위원
- 1978.10월 -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Viborg, 5선)
- 1987-92년 국세부장관
- 1990-92년 경제부장관 겸임
- 1985-98년 자유당 부당수
- 1992-98년 자유당 정치분야 대변인
- 1998년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1998 - 현재 자유당 당수

□ 가족사항

- 부인 (Anne-Mette) 및 1남 2녀 (Henrik, Maria, Christina)

□ 주요 저서

- Opgoer med skattesystemet (Questioning the Tax System,1979)
- Kampen om Boligen (The Struggle for Housing, 1982)
- Fra Socialstat til Minimalstat (From the Social to the Minimal State,1993) 등

다. 정부각료

- Prime Minister: Mr. Anders Fogh Rasmussen (자유당)
- Minister of Finance: Mr. Thor Pedersen (자유당)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r. Per Stig Møller (보수당)
- Minister of Economy, Minister of Business & Industry: Mr. Bendt Bendtsen (보수당)
- Minister of Justice: Ms. Lene Espersen (보수당)

-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 Fisheries: Mr. Hans Christian Schmidt (자유당)
- Minister of Social Affairs, Minister of Gender Equality: Ms. Eva Kjaer Hansen (자유당)
- Minister of Family and Consumers Affairs: Mr. Lars Barfoed (보수당)
- Minister of Employment: Mr. Claus Hjort Frederksen (자유당)
- Minister of Environment & Minister of Nordic Cooperation: Ms. Connie Hedegaard (보수당)
- Minister of Taxation: Mr. Kristian Jensen (자유당)
- Minister of Refugees, Immigration & Integration: Ms. Rikke Hvilshøj (자유당)
- Minister of Culture: Mr. Brian Mikkelsen (보수당)
- Minister of Traffic & Energy: Mr. Flemming Hansen (보수당)
- Minister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r. Helge Sander (자유당)
- Minister of Education & Ecclesiastical Affair: Mr. Bertel Haarder (자유당)
-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 Health: Mr. Lars Løkke Rasmussen (자유당)
- Minister of Defence: Mr. Søren Gade (자유당)
- Minister of Development: Ms. Ulla Tørnæs (자유당)
- Danish EU Commiss ioner: Ms.Mariann Fischer Boel (자유당)

라. 기타 주요인사

□ 왕세자

- Mr. Frederik Rex

□ 상공회의소 소장

- Mr. Lars Krobek
- 1948년 10월 20일 오후스(Aarhus)출생
- 1973년 코펜하겐대학 졸업 (Master Degree in Law)
- 1994년부터 상공회의소 회장 역임중

□ 전경련 회장

- Mr. Hans Skov Christensen

4. 외교관계

가. 외교노선

전통적으로 북구제국의 일원인 동시에 서구문화권의 일원으로 민주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제협력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확립을 외교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범세계적 인권존중 및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위치, 역사 및 문화적 전통, 안보상의 필요와 정치이념 및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2 차 대전 이후부터 중립노선 대신 적극적인 친 서방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NATO 및 북구제국

간의 협력과 UN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대 개도국 개발 원조 제공 등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초기 참가 등 미국의 외교노선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1) 대 EU 관계

- 1972년 : 국민투표에 의해 EC 가입결정 (1973.1.1일자로 EC 가입)
- 1986년 : 국민투표에 의해 Single European Act 비준
- 1993.5.13일 : 국민투표에 의해 구주연합조약 비준 (찬성 56.8%)
- 2000.9.28일 : EURO화 가입여부 국민투표 부결

2) 북구협력

- 덴마크는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연계성에 따라 2차 대전 후 북구제국간의 협력을 제창하였고 1952년 북구이사회(Nordic Council)와 1971년 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가 창설되면서 북구 5개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간의 의회 및 정부차원의 협력이 구체화 되고 있다.

- 덴마크는 북구 5개국 중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EU에 가입한 국가로서 북구협력과 EU는 이해 상충보다는 보완적인 협력분야가 많다고 보고 양기구간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나.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EU 에 가입하고 있으나 에딘버러 협정에 의거 통화 단일화, 공동방위 정책, 유럽시민권, 공동경찰사법정책 4 개항에 대해서는 예외(Opt-out)를 인정받고 있다.

노르딕위원회(NORDIC COUNCIL) 창설멤버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함께 노르딕 국가간 협력체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독립한 발틱 3 국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원칙에 입각, 완전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박, 농업 등 모든 종류의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다. 셴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유럽국가간 국경검문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는 셴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는 1995 년 가입하였으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 개 노르딕 국가의 경우 동 조약의 실제 발효는 2001. 3. 25 에 이루어졌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2 개 노르딕 국가 또한 1996 년 조약 가입 후 1995. 3. 25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북구 전역에 걸쳐 셴겐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덴마크 대사관: THE EMBBASSY OF THE KINGDOM OF DENMARK

- 대사: Mr. Poul O.G. Hoiness
-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5층

- 전화: (+82-2) 795-4187
- 팩스: (+82-2) 796-0986
- E-mail: selamb@um.dk
- WEB: www.ambseoul.um.dk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대한국 관계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다. 덴마크는 남, 북한과 동시 수교국 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틀란디아호)과 600 여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준 바 있다.

양국간 주요 협정

- 1960.12. 9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 1963.10.11 특허권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1969. 9. 5 사증면제 협정
- 1969.12. 4 개발차관 협정
- 1975. 9.18 국제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 1977.10.11 이중과세 방지협정
- 1980. 1. 9 해운협정
- 1987. 4. 2 재입국 사증 면제협정
- 1988. 6. 2 투자보장협정

나. 대북 관계

1973.7 월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3 년 10 월 주덴마크 북한대사관을 설치, 1976 년 10 월에는 마약.술.담배 등의 밀수혐의로 북한 공관원 전원이 추방되었으며 1978.7 월 신임장을 재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98.5 월 경제사정이 어려워 북한대사관은 다시 철수했으며 덴마크지역은 주 스웨덴 북한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2006 년 기준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 북한 수출입 실적

(단위: U$천)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12,869	12,857	12,349	11,216	11,099
수 입	3,702	2,810	2,074	2,089	1,812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Ⅱ. 경제

7. 경제정책

가. 덴마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덴마크의 중도 우파정부는 90 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즉 실업수당의 축소, 실업 수당 수혜기간의 단축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등을 추진하였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파 정부는 2002 년 이후 세금감면 및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특히 2004 년 4 월에는 위축된 민간소비의 진작을 위해 대폭적인 세금인하안이 통과되어 2004 년 1 월부로 소급적용 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 1 인당 연간 약 5 천-1 만 4 천크로네(약$800-2,300) 상당의 추가적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와 실질적인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 같은 감세정책의 효과는 2005 년에도 이어져 가계의 가처분 소득증가, 가계의 순 금융자산의 증가, 2-3%대의 저금리 지속,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을 가져와 경제 호황을 지속하게 하고 있다.

덴마크는 지속되는 경제호황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 65 세 이전 60-64 세 퇴직 시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기퇴직제도를 개선하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며 퇴직 연령을 67 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동력 확보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재정정책

90 년대 후반기의 지속적인 호경기와 정부재정의 긴축 운용으로 97 년 이후 정부 재정은 흑자를 유지하여 왔다.

2000 년 9 월 28 일 실시된 EURO 가입 국민투표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한 2001 년 예산안은 EURO 가입 찬성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국민투표의 부결로 당초 계획보다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였다. 2002 년 이후에도 각종 공공부문에 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재정수지는 2004 년 GDP 대비 2.3% 흑자를 달성한 이래 2005 년 3.1%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EU 25 개국 중 가장 양호한 흑자재정 관리 상황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과열 가능성을 예방 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2006 년도 예산안 역시 전년수준으로 긴축 편성하였다.

한편, 공공부채는 2005 년 기준 GDP 대비 36.1% 수준이 예상되어 EU 권고 허용치인 GDP 대비 6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다. 통화정책

EURO 가입 국민투표는 부결되었으나 덴마크의 통화정책은 EURO 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즉 덴마크 크로네화는 EURO 화 대비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자율 등의 통화정책은 EURO 권과 협력하고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성장

2005 년도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3.1%에 달하여 평균 성장률인 2.0%를 훨씬 상회하는 호황세를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은 개인 소득세 감면, 낮은 이자율, 주택가격의 상승, 낮은 실업률 등에 따른 높은 개인 소비 증가율에 기인하였으며, 여기에 큰 폭의 수출 증가와 설비 투자의 증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 에도 작년에 이어 계속 경제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률은 2004 년과 2005 년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2006 년에도 3.3%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설비투자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고 국제금융시장이 덴마크의 경쟁력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나. 개인소비

개인소비는 2003 년 중반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4 년과 2005 년에 3%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5 년 여름을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개인 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증가속도 둔화 추세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어 금년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하였다.

개인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잇는 것은 개인 실질임금 상승, 과거 수년 동안 소득의 급격한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에서의 소비가 정체되고 있고, 특히 관광분야의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다. 정부지출

정부 지출도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것 보다 높은 것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작년에 County 의 개념을 없애는 대신 덴마크를 5 개의 지역으로 분할하고, 270 개의 지방 자치단체를 98 개로 축소하는 지방 정부 개혁을 단행하여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 정부들은 통합의 효과를 보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방 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실제로 2006 년도 지방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합의한 것 보다 훨씬 과다 지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금년도 정부 지출은 2005 년보다 높은 1.5%를 기록할 전망이다.

라. 투자지출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이자율, 그리고 협소한 노동시장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 년부터 가속화되었던 설비투자의 확대는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여기에 빌딩 활동이 금년에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투자지출의 증가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있어서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 대외교역

2005 년 덴마크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액 증가, 의약품, 기계류 및 운송 장비 수출의 증가와 달러화 대비 유로화 및 덴마크 크로네화의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6 년에는 달러화 대비 덴마크 크로네화의 강세와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그리고 주요 교역 상대국인 EU 국가들이 고 유가의 압박과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입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증가율이 작년보다 낮은 6.4%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5 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로 무려 10.9%가 상승하였는데, 2006 년도 설비투자의 증가, 덴마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8.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바. 고용 및 물가

2004 년부터 지속된 경제 호황세에 따라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5 년에는 5.7%로 하락하였으며, 2006 년에는 4.7%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건축 및 전기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까지 달해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물가는 2004 년도 수입 가격의 하락과 낮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사상 최저치인 1.2%의 증가율 기록 하였고, 2005 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다소 높은 1.8%를 기록하였으며, 2006 년에는 임금상승,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05 년보다 높은 2.1%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3.1	2.6	2.2
개인소비 증가율	3.8	2.4	2.5
정부지출 증가율	1.3	1.5	0.9
총 고정투자 증가율	9.0	8.6	2.8
수출증가율	8.0	6.4	5.0
수입증가율	10.9	8.6	5.0
인플레이션율	1.8	2.1	2.1
실업률	5.7	4.7	4.6
GDP 대비 재정수지	4.0	3.8	3.1
GDP 대비 경상수지	2.9	2.3	2.4

자료원: Danske Bank, Scandinavian Outlook 2006.5 월호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산업 총괄

덴마크의 산업, 특히 제조업은 고도 기술제품 및 산업용 제품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재 생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덴마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제품 중에는 전자, 의약품 및 기계산업 등 고도기술 제품이다. 일반 소비재중에서는 가공식품과 豚肉이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덴마크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쟁력이 없어 사라진 전통 수공예품을 현대의 산업 환경에 응용하여 실용화 시킨 제품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구 제품을 들 수 있다. 덴마크의 가구는 좋은 재질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고 있어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은 가구 산업뿐 아니라, 도자기, 섬유, 공예품 및 가정용 장식품 등에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덴마크의 산업화는 늦은 편이다. 20 세기 초반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나 1930 년 대까지 만해도 덴마크는 1 차 농업생산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세계 제 2 차 대전 이후였으며, 1950 년대 말에 들어서서야 공업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농산물을 앞서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예를 보면 시멘트생산 기술(F.L.Smith), 보청기(Oticon 등), 인슐린(Novo Nordisk)을 비롯한 의약품, 냉난방시스템(Danfoss), 산업용 촉매(Topsoe), 교육용 완구(Lego), 선박부품(Allborg Industries 등), 풍력 발전기(Vestas 등), 오일탱커(Odense Steel Shipyard), 전자의료 장비(Radiometer 등), 광섬유기술 및 생산(Lycom), 펌프(Grunfos), 소비용 전자제품 (Bang & Oulfsen)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제조업이 덴마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 여 년 동안에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2005 년에는 덴마크 고용의 75.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산업으로 성장했다.

나. 제조업

덴마크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산업혁명을 뒤늦게 경험했다. 공업분야 중에는 제 2 차 대전 이전에 시작된 것도 있지만, 공산품 수출액이 농산품 수출액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1950 년대 이후이며, 1960 년대 들어서면서 공업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제조업은 그 이후 급속히 발전해서 1980 년대에는 연평균 생산액이 3%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0 년 대에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연평균 5%이상 성장했으며, 1998 년에는 12%나 성장했다.

다른 산업국들과는 달리 덴마크의 산업개발은 원자재 공급문제가 없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덴마크는 주로 경공업제품과 중간재를 생산해왔으며, 특히 특정 분야의 고도 기술제품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덴마크의 공업은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제조업체의 80% 이상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996 개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공업부문 노동인력의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이 발달한 분야는 식품가공업 및 농산물 가공업과 화학, 제약, 엔지니어링, 가구, 그리고 최근에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전자분야를 들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의 추세는, 식품가공업, 의류 및 금속 등 노동집약 혹은 자원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화학, 전자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도기술 및 know-how 를 중시하는 산업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숙련된 기술자와 기계 및 고도 기술장비에 의존하는 고도기술의 틈새 품목에 특화되어 있다. 간혹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쉬운 이웃 국가의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중간재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는 상호간의 기술지식이나 시설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대학이나 다른 기술개발 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를 주요 병원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는 코펜하겐 인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기업의 기술 개발 사례나 덴마크 섬유 및 의류업체 중 대다수가 모여있는 중부 Jutland 지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각 기업들은 상호간에 장점을 배울 수 있으며, Herning 과 같은 곳에는 지식 및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섬유산업연구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최근 덴마크 제조업의 특징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 기술개발 등만 덴마크에서 하고 생산 시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웃소싱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대부분의 덴마크 업체들이 이미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에서 생산을 고집하던 Lego 사 조차도 최근에 덴마크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동유럽 및 중국에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더라도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서비스산업

덴마크는 선진 복지국가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전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3 년에 전체 노동 인력의 약 74.2%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였으나 2005 년에는 이 비율이 75.9%로 상승하였다.

서비스 부문 중에서 공공 부문의 고용이 가장 큰데, 이들은 주로 공공행정, 보건, 복지 및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산업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서비스 부문 고용 인원 중 약 절반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덴마크는 특히 해상물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A.P. Moller 그룹의 계열사인 머스크사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사로서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IT 및 생명공학 부문의 연구인력도 매우 풍부하여 Hewlett-Packard, IBM, Siemens 등 다국적기업들이 덴마크를 연구개발기지 또는 e-commerce 센터로서 투자진출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대형화 및 국제화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의 Unibank 가 핀란드의 Merita Bank, 스웨덴의 Nordbanken, 노르웨이의 Christiania Bank Og Kreditkasse 은행들과 합병을 통해 2001 년 12 월 북구 및 발트해 연안 내 최대의 금융보험 서비스 그룹인 Nordea 로 태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의 ISS (International Service System)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청소업체이며, Sophus Berendsen 은 대형의 세탁업체이자 수압 장비 제조업체로서 영국의 Rentokil 사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 농림수산업

덴마크는 공업국가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전체 국토의 61.9%가 경작지로서 전통적인 농축산업 생산은 물론 이와 연계된 식품 가공 산업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돈육수출국이며, 또한 밍크모피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집산지이기도 하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 차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운송 및 기타 판매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식품 및 음료 생산업은 덴마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05 년 현재 가공 식품은 전체 공산품 판매의 23.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나 도축업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소속 조합원인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육류 연구소(Danish Meat Research Institute)와 같은 협동조합 기구들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농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돈육산업이다. 덴마크의 돼지 사육 수는 2 천 5 백만 마리로서 덴마크 인구 1 인당 평균 돼지 보유수가 5 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순수한 돈육(신선 육, 냉장 육, 냉동 육 등) 수출만도 2005 년 기준으로 DKK239 억(약 US$40 억)에 달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돈육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덴마크 돈육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어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 년 기준으로 약 4 천 5 백만 불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덴마크 양돈 및 도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덴마크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양돈을 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등으로 투자 진출까지 할 정도이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정부기관, 공공부분, 비영리 단체

○ Parliament (Folketing): www.folketinget.dk
- 덴마크 민주주의 연혁 및 의회구성 내역과 주요 활동 내역

○ Lord Chamberlain's Office: www.kongehuset.dk
- 덴마크 역대 왕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주요 성곽에 관한 정보, 현 여왕의 연간 일정 등

○ Prime Minister's Office: www.stm.dk
- 수상의 주요 업무 활동 내역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um.dk
- 덴마크 대외 정책

○ Ministry of the Interior: www.inm.dk
- 덴마크 각 communes별로 고시되는 일반 행정, 지원 관련 정보EU 국가들의 각종 선거 관련 내용, 이주민 관련 정보

○ Head Quarters, Chief of Defence, Denmark: www.fko.dk
- 덴마크의 육해공 방위에 관한 정보

○ Danish Centre for Human Rights: www.humanrights.dk
- 전세계 인권침해 관련 기사, 현지 인권 단체 기관들의 주요 활동 내역

○ Danish Consumer Council: www.fbr.dk
- 소비자 보호법 및 유해상품 경보 정보

○ Danish Statistiks: www.dst.dk
- 덴마크 통계국이 발간하는 각종 경제 통계 정보

○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www.oem.dk
- 덴마크의 주요 경제 지표 관련 정보

○ Directorate of Prisons & Probation: www.kriminalforsorgen.dk
- 덴마크 내 각종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

나. 상공회의소, 조합단체

○ HTS: www.htsi.dk
- 덴마크 상공회의소의 주요 활동 내역, 회원사 리스트

○ Danish Industry: www.di.dk
- 덴마크 전경련의 주요 활동 내역, 회원사 명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경련의 일정 등

○ Danish Federation of Trade Unions: www.lo.dk
- 덴마크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 활동내역

○ Agricultural Council of Denmark: www.landbrug.dk
- 현지농업 관련 주요 기관들의 조직도 및 대외 활동내역, 농업문제 현안에 관한 리포트

○ Association of Danish Shipbuilders: www.shipbuilders.dk
- 덴마크 조선산업 관련 정보- 회원사 리스트, 통계, 대외홍보기사

○ Association of Danish Ship Owners: www.danmarksrederiforening.dk
- 덴마크 선주협회 회원사 리스트 및 관련 통계

다. 금융기관, 투자회사

○ Industrialisation Fund for the Emerging Market Countries: www.ifv.dk
- 덴마크 해외투자기금 관련 정보, 조직 및 구성 내역

○ Danske Bank: www.danskebank.dk
- 덴마크 최대 은행인 Danske Bank 홈페이지

○ NORDEA: www.nordea.dk
- Nordea 은행(구 UniBank) 홈페이지

라. 언론기관

○ Borsen: www.borsen.dk
- 덴마크 최대 경제일간지를 발간하는 Borsen의 홈페이지로서 Borsen에 게재되는 모든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나, 사용 언어가 덴마크어임.

○ Jyllands-Posten: www.jp.dk
- 덴마크 최대 일간지를 발간하는 Jyllands-Posten의 홈페이지로서 Jyllands-Posten에 게재되는 모든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나, 사용 언어가 덴마크어임

마. 기타

○ Copenhagen Stock Exchange: www.xcse.dk
- 덴마크 증권시장 관련 정보 - KFX-index, press releases

○ Danish Tourist Board: www.turist.dt.dk
- 덴마크 관광 안내 정보 - 식당, 호텔, 교통, 여행사 등

Ⅲ.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거시 경제지표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GDP(DKK 십억, 경상)	1,325.5	1,360.7	1,398.3	1,448.5	1,551.5
실질성장률(%)	1.6	1.0	0.5	2.4	3.1
GDP(U$십억, 경상)	159.1	172.4	211.8	241.7	258.4
1 인당 GDP(US$)	30,183	32,161	39,209	44,742	47,695
물가상승률(%)	2.4	2.4	2.1	1.2	1.8
실업률(%)	5.2	5.2	6.2	6.4	5.7
상품수출(U$십억, FOB)	50.5	55.5	66.2	75.5	83.8
상품수입(U$십억, FOB)	43.7	47.4	56.5	66.8	74.5
외환보유고(U$십억)	17.1	27.0	34.5	37.4	34.2
연평균환율(DKK/U$)	8.3188	7.8812	6.5899	5.9919	6.0034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Danmark statistik, Ministry of Finance 등 종합

덴마크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5	2006	2007
GDP 성장률	3.1	2.6	2.2
개인소비 증가율	3.8	2.4	2.5
정부지출 증가율	1.3	1.5	0.9
총 고정투자 증가율	9.0	8.6	2.8
수출증가율	8.0	6.4	5.0
수입증가율	10.9	8.6	5.0
인플레이션율	1.8	2.1	2.1
실업률	5.7	4.7	4.6
GDP 대비 재정수지(%)	4.0	3.8	3.1
GDP 대비 경상수지(%)	2.9	2.3	2.4

자료원: Danske Bank, Scandinavian Outlook 2006.5 월호

12. 무역통계

가. 대외거래지표

덴마크의 연도별 상품교역 추이

(단위: DKK 십억)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5
수출(DKK 십억, FOB)	424.5	442.4	436.2	451.6	503.1	226.4
수입(DKK 십억, FOB)	368.5	383.2	372.6	390.9	447.5	212.8
경상수지	40.5	27.6	39.2	35.8	55.6	13.6
평균환율 (DKK/U$)	8.3188	7.8812	6.5899	5.9919	6.0034	6.1094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Denmark National Bank

나. 교역대상국별 수출입 통계

덴마크의 주요국별 수출액

(단위: DKK 백만)

수출대상국	2004	2005	2006. 1-5
독 일	79,949	87,802	38,278
스웨덴	58,026	67,263	32,708
영 국	39,522	45,499	21,613
미 국	26,352	33,039	13,280
노르웨이	25,242	26,751	12,520
네덜란드	25,161	26,359	12,760
프랑스	22,577	26,036	11,660
이태리	15,538	16,664	7,569
핀란드	12,946	14,314	6,013
스페인	14,011	13,922	6,538
환율(DKK/U$)	5.9919	6.0034	6.1094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덴마크의 주요국별 수입액

(단위: DKK 백만)

수입대상국	2004	2005	2006.1-5
독 일	87,041	93,650	44,732
스웨덴	53,956	62,065	28,977
네덜란드	27,030	29,975	13,183
영 국	24,222	27,344	13,332
중 국	16,094	21,699	10,876
노르웨이	18,841	20,251	9,906
프랑스	18,396	19,255	9,271
이태리	16,292	18,574	8,007
벨기에	13,856	15,378	6,940
미 국	15,192	12,875	6,954
환율(DKK/U$)	5.9919	6.0034	6.1094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다.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덴마크의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DKK 백만)

수출품목	2004	2005
원유	24,197.7	31,990.7
모바일 폰	6,927.1	12,942.2
인슐린	9,374.1	12,694.8
냉장 돈육	7,912.3	6,937.6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	7,554.3	6,449.0
전기엔진 부품	2,163.1	5,737.9
풍력발전기	5,312.3	5,423.3
햄 및 기타 돈육	4,117.3	4,690.0
헤모글로빈	3,636.8	4,254.8
호르몬 의약품	3,494.0	4,191.3
수출총액	**452,399.8**	**506,920.1**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평균환율(DKK/U$): ('04 년) 5.9919, (' 05) 6.0034

덴마크의 주요 품목별 수입액

(단위: DKK 백만)

수입품목	2004	2005
모바일 폰	8,744.2	19,257.6
1,500-3,000CC 승용차	8,572.9	9,764.9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	5,719.2	6,247.7
1,500-2,500CC 디젤엔진승용차	4,237.2	5,799.3
컴퓨터 기기	3,255.6	4,924.6
가스 오일	2,569.5	4,551.6
원유	2,569.5	4,551.6
컴퓨터 부품	3,069.1	3,404.6
노트북 컴퓨터	2,601.4	3,355.0
제트 오일	1,512.9	2,984.6
수입총액	**400,124.6**	**452,303.6**

자료원: 덴마크 통계청 수출입 통계
평균환율(DKK/U$): ('04 년) 5.9919, ('05 년) 6.0034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덴마크 연도별 수출입 규모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7
수 출	220 (-36.6%)	292 (32.8%)	335 (14.6%)	639 (90.7%)	620 (-2.8%)	410 (10.4%)
수 입	333 (-5.2%)	425 (27.8%)	404 (-4.9%)	471 (16.6%)	560 (18.8%)	353 (8.5%)
수 지	-113	-133	-70	168	60	57

자료원: KOTIS 한국무역통계
주: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마.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덴마크 품목별 수출입현황

2005 년 한국의 대 덴마크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천불)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승용차	240,183	29.7	가축육류	45,017	19.2
선박	113,849	-50.1	가금육류	41,239	41.3
선박용 엔진 및 부품	63,977	49.0	의약품	34,621	31.8
무선 전화기	22,812	1,455.6	발전기	27,002	-26.5
컴퓨터 부품	11,803	-49.7	밍크모피	24,747	50.3
무선 수신기	10,756	144.5	밸브	23,477	29.5
진공 청소기	10,720	5.5	화학기계	23,220	-12.8
합성수지	10,658	223.6	펌프	23,126	-8.9
타이어	9,719	10.7	선박엔진 및 부품	21,151	47.6
칼라 TV	9,444	51.3	가열난방기	17,627	43.8

자료원: KOTIS 한국무역통계 2005 년

13. 투자통계

대외 투자진출 통계/국 별 투자진출 통계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유럽	63.0	31.4	8.4	-12.9	55.0
(독일)	(6.7)	(7.5)	(4.0)	(1.6)	(-0.1)
(네덜란드)	(1.9)	(-2.4)	(3.7)	(-9.8)	(21.4)
(프랑스)	(0.6)	(-1.1)	(1.2)	(2.1)	(-4.3)
(스웨덴)	(9.7)	(5.8)	(0.1)	(-0.3)	(-1.0)
(영국)	(8.3)	(3.3)	(-2.2)	(-3.2)	(33.1)
(노르웨이)	(4.3)	(1.4)	(0.2)	(1.3)	(0.9)
(스위스)	(15.6)	(2.0)	(1.7)	(1.7)	(-1.0)
아시아	-0.9	0.1	-2.1	2.1	4.0
(일본)	(-0.9)	(-1.0)	(-0.4)	(0.1)	(0.8)
미주	4.9	4.5	0.6	1.5	8.5
(미국)	(0.6)	(3.1)	(0.3)	(1.1)	(9.1)
(캐나다)	(0.2)	(-0.3)	(-0.2)	(0.1)	(1.6)
아프리카	0.1	0.1	0.1	1.1	0.4
오세아니아	0.7	-0.2	-0.3	0	0.2
기타	-0.4	-0.1	-0.4	0.1	-0.2
총계	67.4	35.8	6.3	-8.1	67.9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해외투자수치로 년도 중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서 철수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대외 투지진출 통계/업종별 투자진출 통계

(단위: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수산업 및 원자재	0.3	3.3	-4.0	-1.1	25.2
빌딩 및 건축	0.3	-0.8	0.4	0.9	0.2
제조업	12.3	1.4	-2.9	-2.1	7.6
무역, 호텔, 식당	10.0	12.8	9.1	-10.0	-2.8
수송 및 통신	23.5	-3.3	-0.1	-5.2	24.3
금융 및 서비스	13.6	20.3	1.3	0.4	9.5
기타	7.4	2.1	2.5	9.0	3.9
총계	67.4	35.8	6.3	-8.1	67.9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해외투자 수치로 년도 중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서 철수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국별 투자유치 통계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유럽	42.1	22.2	12.1	0.4	39.1
(독일)	(3.7)	(1.8)	(1.0)	(4.2)	(4.0)
(네덜란드)	(-0.7)	(-2.8)	(-1.9)	(-0.7)	(-2.8)
(프랑스)	(3.0)	(2.1)	(0.1)	(-4.6)	(3.9)
(스웨덴)	(23.7)	(10.1)	(2.9)	(-15.5)	(6.0)
(영국)	(9.9)	(7.5)	(0.1)	(5.2)	(2.3)
(노르웨이)	(1.5)	(0.2)	(1.8)	(4.3)	(2.7)
(스위스)	(1.2)	(3.2)	(1.6)	(2.6)	(6.8)
아시아	1.0	-2.5	0.7	2.0	5.0
(일본)	(0.3)	(0.1)	(0.1)	(0.1)	(0.0)
미주	5.9	22.6	1.5	-18.0	0.3
(미국)	(5.5)	(17.4)	(4.6)	(-17.7)	(-1.6)
(캐나다)	(0.2)	(0.1)	(0.0)	(-0.1)	(1.4)
아프리카	0.3	0.6	0.6	1.3	-0.4
오세아니아	1.9	0.3	0.0	-0.2	-0.2
기타	0.2	0.2	0.9	8.4	5.8
총계	51.4	43.4	15.8	-6.1	49.6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년도 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업종별 투자유치 통계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수산업, 원자재	2.9	-1.1	-2.0	-0.4	0.0
빌딩 및 건설	-0.3	-0.8	0.0	1.0	0.0
제조업	14.7	2.5	5.6	3.4	5.8
무역, 호텔, 식당	1.7	9.4	-0.6	-11.8	4.0
운송 및 통신	10.9	5.0	-2.7	-10.5	5.1
금융 및 서비스	20.3	23.7	11.7	8.2	2.3
기타	1.2	4.7	3.8	4.0	32.4
총계	51.4	43.4	15.8	-6.1	49.6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년도 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우리기업의 대 덴마크 투자현황

(단위: US$천)

구 분	2002 년 까지 누계	2003	2004	2005	2006.1-6	총계
투자건수	2	1	0	0	3	6
투자금액	106	200	0	0	1,398	1,70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덴마크 기업의 대 한국 투자현황

(단위: US$천, 건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1-7	누 계
건수	5	5	3	6	3	59
금액	6,906	1,138	4,914	9,993	158	167,362

자료원: 산자부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신고금액 기준)

Ⅳ.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덴마크는 북위 55 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비와 바람이 많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기후가 변화한다. 2 월에는 평균 영하 0.4℃, 7 월에는 16.6℃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64㎜ 정도이며,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 일 정도이다.

나. 주요도시의 기후

(월평균 기온: ℃)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0.1	-0.1	2.0	5.7	10.9	15.1	16.4	16.3	13.2	9.5	5.1	1.8
오후스	0.2	0.1	2.3	5.8	10.8	14.1	16.2	15.9	12.1	8.7	4.4	1.8
오덴세	0.3	0.3	2.6	6.2	11.4	15.0	16.1	16.1	13.0	9.4	5.0	1.9
알보그	-0.4	-0.4	1.9	5.6	10.7	14.4	15.7	15.5	12.3	8.9	4.3	1.3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 년간의 평균수치임
자료원: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월평균 강수량: mm)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46	30	39	39	42	52	68	64	60	56	61	56
오후스	60	41	48	42	50	55	67	65	72	77	80	68
오덴세	52	36	41	38	46	53	62	61	60	62	69	58
알보그	54	35	44	38	49	54	64	67	72	76	75	62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 년간의 평균수치임
자료원: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다. 출장 시 추천복장

9 월 이후 4 월까지의 가을철 및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방수용 재킷 및 우산을 필히 휴대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히 11 월~3 월 중은 본격적인 겨울철로서 보온 및 방수효과가 좋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덴마크의 겨울은 기온이 한국의 겨울보다 온화한 편이므로,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나, 습기를 동반한 저 기온으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꺼운 외투나 자켓이 필요하다.

6 월~8 월(하절기)에는 평균기온이 16-18℃ 정도인 관계로 우리나라의 늦여름이나 초가을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절기는 건기에 해당하여 습도가 낮아 우리나라처럼 무덥지 않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EU 주요국과 함께 하계 일광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한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3 월말부터 10 월말까지는 한국이 7 시간 앞서가며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10 월말부터 익년 3 월 하순까지는 한국이 8 시간 앞서간다. 따라서 한국의 24 시는 덴마크의 동절기에는 16 시, 하절기에는 17 시에 해당된다.

나. 서머타임

서머타임은 인근 주요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3 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 시를 기해 실시되며 (2006 년도의 경우 3.26 일부) 10 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 시를 기해 해제되고 있으나, 반드시 상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의 서머타임 시행 및 종료일을 각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근무시간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09:00-17:00 이나 개인별로 변동 근로 시간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07:00-15:00 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금요일은 주말로서 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3 시 이전에 퇴근하는 업체도 많다.

라. 업종별 근무시간

○ 공공기관 : 월 - 목 09:00 - 17:00 (금 09:00 - 16:00)
○ 우 체 국 : 월 - 금 10:00 - 17:00 (토 10:00 - 17:00)
○ 은 행 : 월 - 금 09:30 - 16:00 (목 09:30 - 18:00)

○ 백화점 및 대형상점
- 월: 10:00 - 19:00
- 화, 수: 10:00 - 18:00
- 목, 금: 10:00 - 20:00
- 토: 10:00 - 17:00

○ 일반상점: 월 - 금 09:00 - 20:00 (토 08:00 - 17:00)

한편, 덴마크는 그 동안 주유소나 영세상점을 제외한 백화점, 할인점, 일반 상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일수를 연간 8 일로 제한했었으나 2005 년 7 월 1 일부터 영업 가능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20 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상점들은 매월 첫 번째 일요일 과 12 월 전체 일요일 그리고 나머지 6 일은 본인들이 선택해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이다.

3. 도량형

가. 도량형

○ 길이의 경우 미터(m), 킬로미터(Km) 등, 무게의 경우 그램(g), 킬로그램(Kg) 등의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전기규격

○ 일반가정: 50HZ, 220V,
- 2 Round Plug 형태
- 3 Round plug를 쓰는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

○ 공장 또는 특별용도 사용처: 50Hz, 380V, 3 Round Plug 형태

다. 기타

○ 모두 EU 규격에 준하고 있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면제협정

ㅇ 한국과 덴마크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 도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덴마크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권(Work Permit)은 입국 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사증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유학생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정한도를 넘지 않은 파트타임 노동은 가능하다.

나. 비자 발급처

□ THE EMBASSY OF THE KINGDOM OF DENMARK

ㅇ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 빌딩 5층
ㅇ 전화 - (+82-2) 795-4187
ㅇ 팩스 - (+82-2) 796-0986
ㅇ WEB - www.ambseoul.um.dk
ㅇ 휴일 -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부활절(2006.4.13-17) 연휴, 크리스마스 등
ㅇ Email - selamb@um.dk
ㅇ 근무시간 - 09:00 - 16:30
ㅇ 소요비용 - DKK 150
ㅇ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사진, 입국사유증명서, 결혼증명서(가족 동반 시), 여권
ㅇ 비자발급 소요기간 - 4 ~ 6주

다. 방역

ㅇ 필요 없음.

라. 출입국절차 및 유의사항

ㅇ 출입국시 별도의 유의사항은 없다.

ㅇ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ㅇ 최근 항공기 탑승 시 보안검사가 강화되어 식칼 등은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되며,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 만이 가능하다.

ㅇ 입국 시에는 여권제시 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마. 세관 신고

ㅇ 휴대품 과다 반입시 세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ㅇ 18세 이상 성인 1 인당 양주 1병, 담배 200개피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 공항-시내 이동

ㅇ 코펜하겐 국제공항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요금은 약 DKK200으로 $35 정도이다.

ㅇ 코펜하겐 공항에서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기차편을 이용할 경우, 시내까지의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이며(매 10분마다 운행) 요금은 편도 27.0 DKK이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제 2터미널 앞에서 250S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코펜하겐 중앙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며 요금은 27.0 DKK로 기차와 동일 하다 (기차와 버스의 환승이 가능함). 한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열 번 사용이 가능한 클립형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가격은 2존의 경우 115 DKK, 3존의 경우는 155 DKK 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존임).

5. 환율/환전

가. 통화단위 및 종류

덴마크의 화폐단위는 Danish Kroner (약어로는 DKK) 이다. 1 크로나는 100 Øre(외레)이며 50, 100, 200, 500, 1000 크로나의 지폐가 있다. 동전으로는 1,2, 5, 10, 20 크로나 및 25, 50 외레의 7 종이 있다.

나. 환율 체제

덴마크는 유로화 가입국이 아니지만 '98 년 하반기부터 유로화 통화바스켓에 포함시키면서 유로화에 대한 환율을 하루에 2.25%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유로화 에 연동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 유로당 7.42~7.44 사이에서 변동되고 있다. 유로화와 같은 추세를 보이는 크로나화의 2005 년 평균환율은 미화 1 불당 DKK 6.0 정도 이다.

연도별 평균환율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US$1 당 DKK	8.0903	8.3188	7.8812	6.5899	5.9919	6.0034

자료원 : 덴마크 중앙은행

다. 환전

덴마크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외환의 환전이 가능하다. 단, 총 환전 금액이 DKK 60,000 을 초과하는 경우 환전은행은 동 거래내역을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공항, 은행 및 시내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여행자수표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20 크로나이며, 수수료 한도는 최소 40 크로나에서 최대 200 크로나이다. 즉 소액 여행자수표 1 매를 환전하더라도 40 크로나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10 매 이상일 경우는 200 크로나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고액권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항 및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 및 기타 환전소에서의 환전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라. 신용카드 사용

덴마크 내 대부분의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6. 물가정보

□ 도시 : 코펜하겐(덴마크)			- 환율 : US$1 = DKK6.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37.54	7.1	구두(1켤레, 소가죽)	190.33
1.2	넥타이(1개, 실크100%)	96.72	7.2	치약(150g, 1개)	2.79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16.56	7.3	칫솔(1개)	2.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4.43	7.4	면도기(1세트)	4.1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247.54	7.5	건전지(1세트, 1.5V AA)	5.74
1.6	스타킹 (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34.26	7.6	화장지(1통, 300매)	7.25
1.7	청바지(Levi's)	147.54	7.7	비누(1개)	2.46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1.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59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4.74	8.2	볼펜(12개)	10.16
2.3	닭고기(1KG, 생닭)	6.56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9.02
2.4	쌀(1KG,Short Grain)	1.97	8.4	공CD(1통, 12개입, 700MB)	21.67
2.5	밀가루(1KG)	1.64	8.5	휴대폰(범용형)	390.84
2.6	설탕(1KG, 백설탕)	1.64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9.84
2.7	계란(10개)	3.93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73.77
2.8	감자(1KG,현지산)	2.79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72.13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2.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46,721.31
3.1	고추장(1Kg)	19.34	9.2	엔진오일(1L)	7.38
3.2	된장(1Kg)	14.75	9.3	휘발류(1L)	1.48
3.3	라면(1개)	1.64	9.4	자동차등록비(2,000cc)	639.34
3.4	설렁탕류 (1인분, 설렁탕, 곰탕등)	25.9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2,131.15
3.5	불고기(1인분, 200g)	27.54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7.54	10.1	지하철(1구간)	2.79
3.7	김치찌개(1인분)	25.9	10.2	시내버스(1구간)	2.7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3.77

4.1	햄버거(1개)	4.58	10.4	택시(추가요금/Km)	2.13
4.2	피자(1판)	22.7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15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55.74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3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9.51
4.5	담배(수입산, 1갑)	5.0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2
4.6	위스키(1병, 750ml)	44.26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25
4.7	커피(1병, 175g)	11.48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5.4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9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nished)	3,606.56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2.0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590.16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96.7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없음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29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6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5.1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1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43.77			
6.2	VTR(6헤드, 범용)	160.93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63.93			
6.4	전자레인지	196.72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2,786.72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없음			

□ 도시 : 코펜하겐(덴마크)			- 환율 : US$1 = DKK6.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2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없음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3,688.52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8%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0,819.67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1,475.41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년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6,229.51	18.6	연간국경일	12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65.57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4,754.1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없음
13.3	골프공(1타)	52.46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22.95	19.1	법정최저자금	81,967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40.9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098.36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66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5,952.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6~14%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57.38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없음			
14.4	치과(스켈링,1회)	73.77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2.79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력지)	46.72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24.26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5.9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261.48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63.11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63.11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46.72			
16.5	조식 (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3.77			
16.6	조식 (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11.48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4,836.07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098.36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현재 코펜하겐-서울간 직항노선은 없으며 KAL, Air France, Lufthansa, KLM, British Air 등을 이용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 등을 경유하거나 SAS 의 도쿄-코펜하겐 혹은 북경-코펜하겐 노선을 이용, 도꾜(나리따 공항)나 북경을 경유 코펜하겐에 도착할 수 있다(비행 시간은 경유지에 따라 다르나 총 13-14 시간 정도 소요됨).

□ 선편

덴마크항구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라인은 없으며, 대부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독일의 함부르크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 총 소요일수는 약 45 일 정도이며 20 피트 콘테이너의 경우 덴마크로부터 한국까지 DOOR TO PORT 요금은 약 9 천크로나 (약 US$1,500) 정도이나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서 덴마크까지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나. 국내교통

전철과 버스는 상호 환승이 가능하며 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다.

ㅇ '06.6월 현재
- 2구간 기본요금 DKK18
- 2구간 10회 사용권 구입 가격: DKK 115

2 구간 티켓의 경우 2 구간 내에서는 1 시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환승 가능하다.

택시는 전화로 부를 수 있으며 노상이나 택시 주차장에서 승차가 가능하다. 택시합승은 불가능하다. (코펜하겐에서의 택시 Call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 서비스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화로 호출 시 5 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정류장이나 도로에서 빈 택시(FRI 표시)에 승차할 수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6 년 기준으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DKK 19 이며,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DKK32.0 이고, 1Km 당 DKK 11.00 이 추가 된다(오후 6 시 이후 저녁에는 1Km 당 DKK 12.10 이 추가되며, 주말 저녁에는 1Km 당 DKK 14.00 이 추가됨).

덴마크는 도로면적이 넓고 도로상태가 양호하여 출퇴근시간 및 일부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덴마크의 총 도로 연장거리는 72,075km(고속도로 1,027km 포함)이며, 철도는 2,785km 로 연간 890 만 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하다.

덴마크와 덴마크 내 주요 도시를 잇는 열차의 소요시간과 요금은 아래와 같다.

덴마크 내 주요 구간 열차 소요시간 및 운임(2006 년 기준)

구분	소요시간	일반석 요금(DKK)	DSB1(DKK)
Copenhagen-Odense	1 시간 30 분	214	321
Copenhagen-Aarhus	3 시간	297	446
Copenhagen-Herning	3 시간	297	446
Copenhagen-Esbjerg	3 시간 15 분	297	446
Copenhagen-Frederikshaven	6 시간	343	515

기차 여행시 꼭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장거리 여행 일반석의 경우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예약비 20 DKK).

이외 덴마크 내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www.dsb.dk (덴마크 기차)
- www.dsb.dk/s-tog (덴마크 전철)
- www.m.dk (덴마크 지하철)

다. 우편 제도

덴마크에서는 등기, 등기 속달, 항공 우편, EMS, DHL 등 특사 우편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항공 우편의 경우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배달 시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DHL 등 특사 우편의 경우는 3일 정도가 걸린다.

우체국을 이용한 편지 및 소포 발송 시 소요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편지 규격, 무게별 우편 요금(2006년 기준)

구분	덴마크 내 (DKK)	유럽 (DKK)	기타지역 (DKK)
규격 23x17cm 무게 50g	4.75	7.5	8.0
규격 33x23cm 무게 50g 이하	5.5	10.0	13.0
무게 100g 이하	8.00	14.0	20.0
무게 250g 이하	13.0	23.0	35.0
무게 500g 이하	22.0	38.0	59.0
무게 1,000g 이하	30.0	63.0	100.0

한편 소포발송 요금은 2006 년 기준으로 덴마크 내 지역일 경우, 1Kg 이하 48 DKK, 5Kg 이하 50 DKK, 10Kg 이하 63 DKK, 15Kg 이하 90 DKK, 20Kg 이하 100 DKK 이며 덴마크 외 지역일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한국
일반	기본료	130 DKK	179 DKK
	Kg 당 금액	10 DKK	34 DKK
속달	기본료	145 DKK	213 DKK
	Kg 당 금액	10 DKK	68 DKK

덴마크에서 외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에는 A: Prioritaire 또는 B: Economique 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A: Prioritaire 는 B: Economique 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배달기간이 짧고, B: Economique 는 A: Prioritaire 에 비해 요금은 싸지만 배달기간이 길게 걸린다. 만약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A: Prioritaire 로 간주된다. 우편물의 등기 발송을 위해서는 추가 50DKK 의 요금을 내야 한다.

라. 국제통신

덴마크의 통신시장은 국영통신 기업인 TDC 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1996 년 7 월 1 일 덴마크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2006 년에도 여전히 통신망은 TDC 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TDC 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선 통신 사업자로는 TDC, Sonofon, Telia Telecom, 3 등 4개사가 있다

□ 덴마크 유선통신망 보유업체: TDC A/S

- ADD : Nørregade 21, DK-0900 Copenhagen C
- TEL : (45) 3343 7777
- FAX : (45) 3343 7619
- 홈페이지 : www.tdc.dk

□ 덴마크 무선통신 서비스업체

○ TDC A/S
- ADD : Kannikegade 16, 8000 Aarhus C
- TEL : (45) 8933 7777
- FAX : (45) 8933 7719
- 홈페이지 : www.tdc.dk

○ Sonofon A/S
- ADD : Skelagervej 9, 9100, Aalborg
- TEL : (45) 7212 6000
- FAX : (45) 7212 7070
- 홈페이지 : www.sonofon.dk

○ Telia Telecom A/S
- ADD : Ejby Industrivej 135, 2600, Glostrup
- TEL : (45) 8831 3131
- FAX : (45) 8831 3030
- 홈페이지 : www.telia.dk

○ 3 (3세대 모바일폰 서비스 제공업체)
- ADD : Arne Jacobsens Alle 17, 2300, Copenhagen S
- TEL : (45) 3333 0135
- FAX : (45) 3333 0155
- 홈페이지 : www.3.dk

□ 통신요금

○ 이동전화기: DKK 0.75-1.30/분(계약조건에 따라 약간씩 상이)
○ 유선전화기: DKK 0.25/분(유선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DKK1.75/분(무선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 현지에서 한국으로 통화방법

- 00 + 82 (한국) + 지역코드 (예: 서울 2) + 전화번호

또한 현지에서 한국으로 COLLECT-CALL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3 분당 5,310 원 정도이다(호출번호: 8001-0382). 호텔룸에서 국제전화 사용료는 일반가정에서의 전화요금의 6 배 수준이며 호텔마다 통화료가 상이하다.

마. 국내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카드식과 동전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동전식은 1, 5, 10, 20 크로나 동전이 사용 가능하다.

모든 공중전화기에는 사용설명서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부착되어 있으며 국제전화 코드는 00 이고 시외통화도 시내와 마찬가지로 별도 코드 없이 8 자리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덴마크 내 지역코드가 별도로 없음). 카드는 KIOSK 라고 불리는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1)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

- ADD : Amager Boulevard 70, 2300, Copenhagen S
- TEL : (45) 3396 5000
- FAX : (45) 3396 5500
- 홈페이지: www.radissonsas.com

- PRICE :
  - 정상가격: DKK 1,550/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무역관 할인가격: DKK995/ 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도심에서 도보로 1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전시장인 Bella Center 에 가깝고 코펜하겐에서는 최고급 호텔에 속함

2) MARRIOTT HOTEL

- ADD : Kalvebod brygge 5, 1560, Copenhagen V
- TEL : (45) 88 33 99 00
- FAX : (45) 88 33 99 99
- 홈페이지: www.marriott.dk

- PRICE :
  - 정상가격: DKK 1550/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무역관 할인가격: DKK1,095/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W
  * 도심에서 도보로 10 분 정도 떨어진 해변에 있으며, 코펜하겐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깨끗한 호텔임

3) IMPERIAL HOTEL

- ADD : Vester Farimagsgade 9, 1606, Copenhagen V
- TEL : (45) 3312 8000
- FAX : (45) 3393 8031
- 홈페이지: www.imperialhotel.dk

- PRICE :
  - 정상가격: DKK 1460/Single(조식 미포함), DKK1,650/Double(조식 미포함)
  - 무역관 할인가격: DKK895-DKK1,240/Single(조식 미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도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호텔에 속하나 상기 2 개의 호텔과 비교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편임

4) ADMIRAL HOTEL

- ADD : Toldbodgade 24, 1253, Copenhagen K
- TEL : (45) 3311 8282
- FAX : (45) 3332 5542
- 홈페이지: www.admiralhotel.dk
- PRICE: DKK 1,175/SINGLE(조식 미포함), DKK1,495/Double(조식 미포함)

* 덴마크 여왕이 거주하는 아말리엔 궁에 가깝고, 해변에 위치한 고급호텔임.

5) ASTORIA HOTEL

- ADD : Banegaardspladsen 4, DK-1570, Copenhagen V
- TEL : (45) 3342 9900
- FAX : (45) 3342 9999
- 홈페이지: www.hotelastoria.dk
- PRICE: DKK 990/SINGLE(조식 포함), DKK 1,290/Double(조식 포함)

*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 호텔에 속함.

6) CITY HOTEL

- ADD : P. Skrams Gade 24, 1054, Copenhagen K
- TEL : (45) 3313 0666
- FAX : (45) 3313 0667
- 홈페이지: www.hotelcity.dk

- PRICE :
  - 정상가격: DKK 995/Single(조식 포함), DKK 1,250/Double(조식 포함)
  - 무역관 할인가격: DKK 895.50/Single(조식 포함), DKK 1,125/Double(조식 포함)

* 무역관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하나 Room 이 적은 편임.

7) OPERA HOTEL

- ADD : Tordenskjoldsgade 15, 1055, Copenhagen K
- TEL : (45) 3312 1519

ㅇ FAX : (45) 3332 1282
ㅇ 홈페이지: www.hotelopera.dk

ㅇ PRICE :
- 정상가격: DKK 1,190/Single(조식 포함), DKK 1,490/Double(조식 포함)
- 무역관 할인가격: DKK 615-1,010/Single(조식 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무역관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함.

8) CAB INN City

ㅇ ADD : Mitchellsgade 14, DK-1568 Copenhagen C
ㅇ Tel: (+45) 33 46 16 16
ㅇ Fax: (+45) 33 46 17 17
ㅇ Email: city@cabinn.com
ㅇ Web: www.cabinn.dk

ㅇ 가격
- Standard room: 1인실 525 DKK, 2인실 645 DKK, 3인실 765 DKK
- Commodore : 1인실 625 DKK, 2인실 745 DKK
- Captains Class : 1인실 725 DKK, 2인실 845 DKK
* 중앙역 근처에 있으며, 코펜하겐 시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는 호텔임. Room이 매우 적은 것이 단점이나 비교적 깨끗한 편임.

□ 호텔의 종류

ㅇ 크로(KRO):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숙박시설로 옛날 국왕의 지방 행사 때 사용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당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음

ㅇ 고성호텔(CASTLE HOTEL): 원래 지방영주의 저택을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고전적인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ㅇ 미션호텔(MISSION HOTEL):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숨겨진 명소 같은 곳으로 덴마크의 노부부등이 주로 이용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임

ㅇ 일반호텔: 호텔은 작고 깨끗하나 요금은 비싼 편임.

나. 식당

1) 한국식당

□ Restaurant Korean Palace (비원)

ㅇ ADD : Peder Skramsgade 15, 1054 Copenhagen K
ㅇ TEL : (45) 3314 9330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저녁 시간만 영업을 하나 사전에 예약할 경우 점심도 가능함.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주요 메뉴임.

□ Seoul Restaurant (서울식당)

- ADD : Skjulhøj Alle 8 a 2720 Vanløse
- TEL : (45) 3871 8886

* 코펜하겐 시내에서 차로 15 분 정도 벗어난 곳에 위치하며, 한식 대부분을 맛 볼 수 있으며, 중식도 일부 가능함.

□ Sakura (벚꽃)

- ADD :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 TEL : (45) 3313 1189

* 스시, 사시미 등 일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식도 일부 있음. 가격은 상기 2 곳의 한국식당 보다 비싼 편임.

□ O MO NIM (어머님)

- ADD : GASVORKSVEJ 21
- TEL : (45) 3131 5220

* 중앙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목,금,토 4 일 저녁만 영업하며, 일식과 한식을 겸하고 있음.

2) 중국식당

□ ROYAL GARDEN

- ADD : DRONNINGENS TVAERGADE 30
- TEL : (45) 3315 1607

* 시내에 있으며 다른 음식보다는 딤섬요리를 비교적 잘하는 식당임.

□ DOUBLE HAPPINESS

- ADD : GL. KONGEVEJ 33B
- TEL : (45) 3123 3667

* 시내에 있으며 특별한 특징은 없는 중국식당이나 바다가제 요리를 잘하는 편임.

□ DONG YUAN

- ADD : Holbergsgade 17, 1057 Copenhagen K.
- TEL : (45)3332 8388

* 무역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특징은 없으나 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임.

□ FLOATING RESTAURANT SEA PALACE

- ADD : HAVNEGADE KAJPLADS 139
- TEL : (45) 3393 8889

* 시내에 위치한 일반 중국식당임.

3) 일본식당

□ KYOTO

- ADD : SAS SCANDINAVIA HOTEL, AMAGER BLVD 70
- TEL : (45) 3332 1674

*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 내에 소재한 일식당으로 음식은 깨끗하나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임.

□ Sticks' n Sushi

- ADD : Nansensgade 59, Copenhagen K
- TEL : (45) 3311 1407

*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식당으로 스시와 꼬치요리를 잘함.

4) 덴마크식당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음식인 스뫼레브뢰(Smørrebrød)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다름.

□ LA-KAJEN

- ADD : Sundkrogskaj 17, 2100 Copenhagen
- TEL : (45) 3920 3022

□ KANAL CAFEEN

- ADD :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 TEL : (45) 3311 5770

□ Langelinie Pavillonen

- ADD : Langelinie, 2100 Copenhagen
- TEL : (45)3312 1214

□ Kongens Kælder

- ADD : Gothersgade 87, Copenhagen K
- TEL : (45)3312 8719

5) 기타 양식당

□ Albert K at The Royal (고급 이태리식당)

- ADD : Hammerichsgade 1, 20 th floor, København V
- TEL : (45) 3342 6161

□ Kong Hans Kælder (고급 프랑스 식당)

○ ADD : Vingårdsstræde 6, København K
○ TEL : (45) 3311 6868

다. 대표 먹거리

덴마크는 축산 낙농업이 발달하여 치즈나 버터 등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 요리가 발달하였으며 수산물로는 연어와 청어를 즐겨먹는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스뫼레브뢰(Smørrebrød)가 있는데 이는 호밀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샌드위치로 흔히 맥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냅스(Snaps)가 곁들여진다.

Flæskesteg 는 오븐에 구운 돼지고기 요리로 고기와 함께 붙어 나오는 바삭 바삭한 돼지 껍질을 먹는 것이 별미이며, 감자와 함께 먹는 덴마크식 미트볼 요리인 Frikadeller 과 폭찹 요리인 Koteletter 등도 덴마크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요리들이다.

디저트로 커피와 함께 먹는 데니쉬 페스트리도 유명한데 버터를 겹겹이 발라 반죽을 하고 필링과 토핑 곁들인 이 빵은 1840 년경 비엔나에서 전해졌다고 하여 비너브로트(Wienerbrød, 비엔나빵)이라고 불린다.

9. 관공서 관행

관공서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하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하나 처리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뇌물수수나 급행료 징수 등의 불법행위는 일체 없다.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덴마크는 항상 최상위권에 속한다.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화, 팩스, E-mail 을 통한 문의회신 및 업무처리도 매우 친절하게 이루어진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접 방문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시간절약을 위해 가급적 직접면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관공서 경향을 보면 먼저 전화나 E-MAIL 등으로 연락을 하고 면담 시에는 반드시 RECEPTION 에서 안내를 받아 면담이 이루어진다.

10. 공휴일

□ 출장 시 업체상담이 어려운 기간

4 월 부활절 기간, 7 월 둘째 주 ~ 8 월말 까지는 Industrial Holiday 로 업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대부분이 휴가에 들어가며, 동 기간 전후 1 주간을 포함한 기간 중 담당자 부재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동계기간 중에는 12 월 중 크리스마스 이전인 12.20 부터 신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하계휴가기간과 동계 크리스마스 휴가기간 중에는 비즈니스출장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 년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명	영문
1 월 1(일)	신년	New Year's Day
4 월 13(목)~17(월)	부활절	Easter Holiday
5 월 1(토)	노동절(반휴일)	Workers day
5 월 12(금)	대기도일	Great Prayers Day
5 월 25(목)	승천일	Ascension
6 월 5(일)	헌법제정일(반휴일), 성령강림절	Constitution Day, Whit Sunday
12 월 24(토)~26(월)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 Boxing day
12 월 31(토)	신년 이브	New Year's Eve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덴마크는 북위 55 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10 월부터 4 월까지의 기간에 덴마크를 방문할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 초겨울 이상의 기후임을 감안하여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방수가 가능한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6 월-8 월말 까지는 낮 최고기온이 20℃를 넘는 매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도 한국의 여름처럼 무덥지가 않아,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편이다. 2 월에는 평균 영하 0.1℃, 7 월에는 평균 16.4℃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 정도이다.

□ 비에 대한 대비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 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며, 특히 9 월 이후의 가을 및 겨울, 3~4 월까지의 기간 중 집중되므로, 동 기간에 덴마크 여행시 필히 소형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여행여건

□ 치안

최근 들어 외국 난민유입증가, 마약 복용자 증가 등으로 가끔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치안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집단 범죄, 흉악범죄 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외출 등을 해도 무방하다. 최근 공항에서 동전 떨어진 것을 집으려다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는 등 소지품 분실사례가 빈번하며, 코펜하겐 중심부에 소재한 중앙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곳에 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코펜하겐 시내 택시 전화 : 3535 3535, 7025 2525) 택시요금은 신용카드로 지불도 가능하다.

□ 응급

여행시 급한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전화 112 를 호출 앰뷸런스-FALCK 서비스 가능) 입원비는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입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살수 없으며 약품 구입에는 Home Doctor 의 처방이 필요한 관계로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약품은 여행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자주 걸리기 쉬운 감기(influenza)의 경우, 별도의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휴식 등 자연치유를 권하는 점이 특색이다.

□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반드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표시로 약간의 팁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1-2 불 정도). 음식점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이미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감사표시를 하고 싶을 경우 음식대금의 10% 이하의 팁을 주어도 무방하다. (과도한 팁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식수

덴마크인들은 자국의 환경에 대한 신뢰가 깊은 관계로 일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 쇼핑

□ 물가

덴마크의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다. 여행객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경우 2-4 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는 모든 물건가격에 부가세가 25%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전체적인 물가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담배 값은 우리나라의 3 배,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은 2-3 배 정도 비싸다.

□ 쇼핑장소 및 특산품

코펜하겐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장소는 콘겐스뉘토르(Kongens Nytorv)광장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Walking street 로 이곳에는 Magasin 백화점, Illum 백화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Porcelain 제품으로 유명한 Royal Copenhagen, 은제품으로 유명한 George Jensen(게오르그 옌센), 사가밍크, 호박(Amber), 고급 혁화인 ECCO 등을 판매하는 유명상점이 밀집해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현지 관공서

ㅇ The Prime Minister's Office
- Tel. (+45)3392 3300 Fax. (+45)3311 1665 Email: stm@stm.dk
- Web : www.stm.dk
- Add : Christiansborg, Prins Jørgens Gaard 11, 1218 Kobenhavn K

ㅇ Ministry of Economic & Business Affairs
- Tel. (+45)3392 3350 Fax. (+45)3312 3778 Email: oem@oem.dk
- Web : www.oem.dk
- Add : Slotsholmsgade 10-12, 1216 Copenhagen K

ㅇ Ministry of Finance
- Tel. (+45)3392 3333 Fax. (+45)3332 8030 Email: fm@fm.dk
- Web : www.fm.dk
- Add : Christiansborg Slotsplads 1, 1218 Kobenhavn K

ㅇ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el. (+45)3392 0000 Fax. (+45)3254 0533 Email: um@um.dk
- Web : www.um.dk
- Add : Asiatisk Plads 2, 1448 Kobenhavn K

ㅇ Ministry of Transport & Energy
- Tel. (+45)3392 3355 Fax. (+45)3312 3893 Email: trm@trm.dk
- Web : www.trm.dk
- Add : Frederiksholms Kanal 27, 1220 Kobenhavn K

ㅇ Ministry of Environment
- Tel. (+45)3392 7600 Fax. (+45)3332 2227 Email: mim@mim.dk
- Web : www.mim.dk
- Add : Hoejbro Plads 4, 1200 Kobenhavn K

ㅇ Ministry of Family & Consumer Affairs
- Tel. (+45)3395 1310 Fax. (+45)3395 1311 Email: mimff@mimff.dk
- Web : www.mimff.dk
- Add : Stormgade 2-6, 1470 Kobenhavn K

ㅇ Ministry of Education
- Tel. (+45)3392 5000 Fax. (+45)3392 5567 Email: uvm@uvm.dk
- Web : www.uvm.dk
- Add : Frederiksholms Kanal 21-25, 1220 Kobenhavn K

ㅇ Ministry of Ecclesiastical Affairs
- Tel. (+45)3392 3390 Fax. (+45)3392 3913 Email: km@km.dk
- Web : www.km.dk
- Add : Frederiksholms Kanal 21, 1220 Kobenhavn K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Health
- Tel. (+45)7226 9000 Fax. (+45)7226 9001 Email: im@im.dk
- Web : www.im.dk
- Add : Holbergsgade 6, 1057 Kobenhavn K

○ Ministry of Refugees, Immigration & Integration
- Tel. (+45)3392 3380 Fax. (+45)3311 1239 Email: inm@inm.dk
- Web : www.inm.dk Add : Holbergsgade 6, 1057 Kobenhavn K

○ Ministry of Employment
- Tel. (+45)3392 5900 Fax. (+45)3312 1378 Email: am@am.dk
- Web : www.am.dk
- Add : Holmens Kanal 20, 1060 Kobenhavn K

○ Ministry of Defence
- Tel. (+45)3392 3320 Fax. (+45)3332 0655 Email: fmn@fmn.dk
- Web : www.fmn.dk
- Add : Holmens Kanal 42, 1060 Kobenhavn K

○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 Development
- Tel. (+45)3392 9700 Fax. (+45)3332 3501 Email: vtu@vtu.dk
- Web : www.videnskabsministeriet.dk
- Add : Bredgade 43, 1260 Kobenhavn K

○ Ministry of Social Affairs
- Tel. (+45)3392 9300 Fax. (+45)3393 2518 Email: sm@socialministeriet.dk
- Web : www.social.dk
- Add : Holmens Kanal 22, 1060 Kobenhavn K

○ Ministry of Justice
- Tel. (+45)3392 3340 Fax. (+45)3393 3510 Email: jm@jm.dk
- Web : www.jm.dk
- Add : Slotsholmsgade 10, 1216 Kobenhavn K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Tel. (+45)3392 3301 Fax. (+45)3314 5042 Email: fvm@fvm.dk
- Web : www.fvm.dk
- Add : Holbergsgade 2, 1057 Kobenhavn K

○ Ministry of Taxation
- Tel. (+45)3392 3392 Fax. (+45)3314 9105 Email: skm@skm.dk
- Web : www.skm.dk
- Add : Nicolai Eigtveds Gade 28, 1402 Kobenhavn K

○ Ministry of Culture
- Tel. (+45)3392 3370 Fax. (+45)3391 3388 Email: kum@kum.dk
- Web : www.kum.dk
- Add : Nybrogade 2, 1015 Kobenhavn K

ㅇ Copenhagen City Hall
- Tel : (+45)3366 3366 Fax: (+45)3366 7005
- Web : www.copenhagencity.dk
- Add : Raadhuset, 1599 Copenahgen V.

나. 은행

ㅇ Danske Bank
- Tel : (+45) 3344 0000 Fax: (+45)7012 1080
- Add : Holmens Kanal 2-12, 1092 Copenhagen K

ㅇ Nordea
- Tel : (+45) 3333 3333 Fax: (+45)3250 2382
- Add : Christiansbro Strandgade 3, 0900 Copenhagen C

ㅇ BG Bank A/S
- Tel : (+45) 7011 9959 Fax: (+45)3914 4899
- Add : Nørre Voldgade 68, 1390 Copenhagen K

ㅇ Jyske Bank
- Tel : (+45) 3378 7878 Fax: (+45)3378 7575
- Add : Vesterbrogade 9, 1780 Copenhagen V

다. 경제단체

ㅇ 상공회의소 (HTS ; THE DANISH CHAMBER OF COMMERCE)
- ADD : BOERSEN, DK-1217, KBH K
- TEL : (45) 70 13 12 00
- FAX : (45) 70 13 12 91
- WEB : www.htsi.dk
- 기능 : 상공인들의 이익도모 및 대변

ㅇ 전국경제인협회(THE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 ADD : H.C. ANDERSENS BOULEVARD 18, DK-1790 KBH V
- TEL : (45) 9712 6000
- FAX : (45) 9722 3060
- 기능 : 덴마크내 제조업체의 이익대변 및 수출진흥활동

ㅇ Danish Slaughter House Association(Danske Slaugterier ; 덴마크도축협회)
- Add : Axeltorv 3, DK-1609 Copenhagen V.
- Tel : (+45)3311 6050
- Fax : (+45)3311 6814
- WEB : www.di.dk
- 기능 : 덴마크 Slaughter House의 각종 이익대변

ㅇ Denmark Ship Owners Association
- Add : Amaliegade 33, DK-1256 Copenhagen K.
- Tel : (+45)3311 4088
- Fax : (+45)3311 6210
- 기능 : 덴마크내 선주들의 이익대변

ㅇ Danish Fur Producer Association
- Add : Langagervej 60, DK-2600 Glostrup
- Tel : (+45)4326 1000
- Fax : (+45)4326 1126
- 기능 : Fur 제조업체들의 이익대변

라. 한국기관

ㅇ 대사관
-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 SVANEMOELLEVEJ 104, 2900 HELLERUP
- TEL : (+45) 3946 0400
- FAX : (+45) 3946 0422
- 영사과 전화: (+45) 3946 0405

ㅇ KOTRA 무역관
- KOREA TRADE CENTER, COPENHAGEN
- ADD : HOLBERGSGADE 14, 1057 COPENHAGEN K
- TEL : (45) 3312 6658
- FAX : (45) 3332 6654
- 관장 : 선 석기

ㅇ 한인회장
- Tel : (+45) 2683-8037
- Fax : (+45) 3630-8813
- E-mail : mrko@tiscali.dk
- 성명 : 고태정

13. 관광명소

가. 코펜하겐

인구 140 만(인근의 코펜하겐 위성도시 거주인구 포함)의 북구 최대의 도시이며 코펜하겐의 어원은 덴마크어로 상업항구(Commercial harbour)라는 뜻으로 중세 이후 북구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1167 년 ABSALON 대주교에 의해 건설되어 Christian 4 세 때(1588-1648)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17 세기 스웨덴의 침공, 18 세기 흑사병, 두 번의 대 화재를 겪었으며 19 세기 나폴레옹 전쟁시 영국군에 의한 두 차례의 공격, 제 2 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점령 등 수난을 겪으면서도 운하, 인공호수 등 옛모습을 간직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아말리엔보 왕궁: Amaliaenborg Palace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 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Frederiks 5 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 개의 로코코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Frederik 3 세의 왕비 Sophie Amalie 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근처 바닷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Jean Delognne 가 설계한 Amaliehavn 정원이 있다.

2) 크리스천보 궁: Christiansborg Palace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 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현재는 상공회의소)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Absalon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 년에 재 건립되었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1794,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 개방시간 (안내관광만 허용)
  - 국회의사당 (일): 10:00 - 11:00
  - 왕실접견실 (목, 일): 11:00, 15:00

3) 로젠보성 : Rosenborg Palace

Christian 4 세에 의해 건설(1606-1617)된 왕궁으로 이곳에서의 볼거리는 성 지하에 있는 왕가 보물이다. 이곳에는 왕관 등 각종 왕실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여왕도 행사 때 이곳에서 왕관 등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

- 개방시간: 10:00 - 14:00 (화, 금, 일)

4) 인어상 : The Little Mermaid

안데르센 동화의 비극적인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 년 덴마크의 Edvard Eriksen(1876-1959)이 조각한 동상으로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의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아왔으나 2003 년 9 월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에 의해 완파된 후 다시 복원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끔 사진촬영을 위해 인어 동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위가 미끄러워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게피온 분수 : Gefion Fountain

북구여신 게피온이 네 아들을 황소로 만들어 스웨덴으로부터 Zealand 섬을 끌고 왔다는 신화에 따라 세운 분수로 코펜하겐의 유래가 있는 관광명소이다.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Vanern 호의 자국이 Zealand 섬과 비슷하다.

6) 티볼리 : Tivoli 공원

1843 년 건설된 Tivoli 공원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26 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4 월말부터 9 월 중순 및 12 월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7) 그룬트비 교회 : Grundvig 교회

고등공민학교의 창립자인 그룬트비 목사를 기념하여 1921-40 년에 거국적으로 건립한 교회로 20 세기초 덴마크의 대표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600 만개의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파이프오르간이 특히 유명하다.

○ 개방시간 : 09:00 - 16:00 (월-토), 12:00 - 13:00 (일)

나. 질랜드 섬

코펜하겐시가 위치한 섬으로 헬싱거(Helsingor), 로스킬드(Roskilde), 힐러뢰드(Hilleroed) 등 주요도시가 있다.

1) 크론보 성 : Kronborg Slot

프레데릭 2 세의 명령에 따라 1574-85 년에 축조된 일종의 해군 요새로 헬싱거에 위치(코펜하겐 북쪽 45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론보성은 북해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해협의 가장 좁은 길목에 위치하여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인 "햄릿"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 개방시간 : 10:00 - 15:00 (화-일)

2) 프레데릭스보 성 : Frederiksborg Slot

1602-1620 년 Christian 4 세에 의해 건설된 북구에서 가장 훌륭한 르네상스시대의 성으로 힐러뢰드(Hilleroed)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36km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덴마크 국립역사 박물관으로 Christian 1 세 이후 왕가일족의 초상화, 가구, 예술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

○ 개방시간 : 10:00-15:00 (월-일)

3) 프레덴스보 왕궁 : Frendensborg Palace

1719-22 년 건립된 바로크양식 왕궁으로 왕실의 하계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펜하겐 북서쪽 40km 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은 상시 개방이나 왕궁은 7 월만 개방)

다. 로스킬드 (Roskilde)

덴마크의 가장 오래된 도시중의 하나로 옛날 바이킹의 근거지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 바이킹 박물관 : Viking Ship Museum

수심이 깊지 않은 로스킬드만에 가라 앉은 바이킹배 5 척을 1962 년 인양하여 전시한 박물관이다.

○ 개방시간 : 10:00 - 16:00 (월-일)

2) 로스킬드 성당 : Roskilde Domkirke

1000 년경에 지은 목조건물을 토대로 12 세기 압살론 주교가 건립한 성당으로 38 명의 덴마크 왕 및 왕비의 무덤이 있다.

라. 유트랜드 반도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덴마크 본토로 7,448㎢에 2.4 백만이 거주하고 있다.

1) Lego Land

인어상과 함께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 사에서 조성한 공원이다. 모든 놀이기구가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 원색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곳이다.

주요 쇼핑센터 및 상점

쇼핑 센터 및 상점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Magasin du Nord	Kgs. Nytorv 13, København K +45 33 11 44 33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Dansk Møbel Kunst	Bredgade 32, København K +45 33 32 38 37	덴마크 디자인 가구
Dyrberg/Kern	Niels Hemmingsens Gade 4, København K +45 33 93 73 77	덴마크 디자인 보석, 시계, 의류
Ecco	Østergade 55, København K +45 33 12 35 11	덴마크 디자인 구두, 신발, 어린이 신발, 의류, 패션
GAD - Strøget	Vimmelskaftet 32, København K +45 33 15 05 58	도서, 문구, 음악, 비디오
Georg Jensen	Amagertorv 4, København K +45 33 11 40 80	덴마크 죠오지 옌슨 디자인 보석, 시계
Illums Bolighus	Amagertorv 10, København K +45 33 14 19 41	고급 덴마크와 유럽 디자인 가구, 램프, 유리 디자인, 부엌 기구, 수제품
Illum	Østergade 52, København K +45 33 14 40 02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Br Legetøj, Strøget	Frederiksberggade11, København K +45 33 13 74 70	덴마크 체인상점장난감, 게임
Dansk Håndværk	Kompagnistræde 20, København K +45 33 11 45 52	덴마크 전형적인 수제품 상점

Ⅴ.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덴마크와의 교역 및 비즈니스는 매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덴마크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으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무역관련 법규로는 Købeloven (Law of Sale), Aftaleloven (Law of contracts), Forbrugeraftaleloven(Law of consumer contracts)등이 있으며 덴마크 법규에 대한 안내는 www.retsinfo.dk/welcom.htm을 참고할 수 있으나 법규 내용은 모두 덴마크어로 되어 있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금지 품목 및 허가품목

덴마크는 대부분 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고, 수입금지품목 및 허가 품목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수입 금지품목 및 허가품목은 아래와 같다.

○ 수입금지품목
- 마약,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복제품, 덴마크 동식물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동식물

○ 수입승인 및 허가품목
- 산 동물 및 그 제품, 생선 및 생선제품, 사람 및 동물에 사용되는 약품, 독약, 무기 및 폭발물, 방사능 물질 및 폐기물, 반덤핑 등 수입규제 품목

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공통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관세장벽은 없다.

비관세장벽도 덴마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수입쿼터 및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같은 경우는 EU에서 취하는 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 수입쿼터

덴마크는 EU회원국으로서 별도의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EU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현재 EU 에서 쿼터를 정하고 있는 품목은 신발, 섬유/의류, 철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http://sigl.cec.eu.int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해당 제품을 클릭하고 해당 국가를 선택해서 세부 품목을 검색하면 된다. 현재까지 소진된 양도 검색이 가능하다.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수입물품의 가치산정, 제품군의 분류, 관세부과 절차 등을 EU 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EU 회원국간 거래시에는 관세를 부과치 않고 있으며 EU 역외국 생산 제품의 수입 시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와 특별 협정에 의거 개발도상국, EFTA 회원국, 중앙 및 동부유럽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가치는 통상 인보이스 기재 가격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입관세는 인보이스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 EU 국경까지 수송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관세분류는 HS 분류체계를 기초로 EU 통합분류(C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 가격에 의한 종가세이나 종량세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관세 혜택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관세 : EU 회원국
- 특혜관세: 협정 체결국 및 지중해 연안국에 대해 품목별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
- 일반특혜관세: 개도국 공산품에 적용
- 일반관세: 역외국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

나. 관세율 알아보는 법

덴마크 관세율은 EU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EU 관세율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에 접속한 뒤 Code taric 을 클릭하여 상품코드를 입력한 후 해당관세율을 확인하거나 Designation traic를 클릭하여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관세율을 찾아볼 수 있다.

다. 관세 납부

수입업자의 경우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 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하여야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 지고 있다.

18.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크

CE 마크는 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증서다. CE 마크는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통용되며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환경 보호 측면에서 유럽의 기준을 준수함을 의미한다.

나. 대상 품목

유럽 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 전에 CE 마크를 필요로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괄호 안은 EU 규정)

- 50 ~ 100 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저전압 기기
- 프린터잉크 (87/404/EEC)
- 장난감 (88/378/EEC)
- 건축자재 (89/106/EEC)
-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89/336/EEC)
- 개인보호장비 (89/686/EEC)
- 비자동 저울 (90/384/EEC)
-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AIMD)
- 가스기기 (90/396/EEC)
- 유체 및 가스 연료 사용의 온수 보일러 (92/42/EEC)
- 민수용 폭약 (93/15/EEC)
- 의료기기 (93/42/EEC, MDD)
- 방폭제품 (equipment explosive atmostpheres: 94/9/EC)
- 레크리에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94/25/EC)
- 승강기 (95/16/EC)
- 프린터 (97/23/EC)
- 산업용 기계류 (98/37/EC)
-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 product: 98/79/EC, IVDD)
- 무선기기와 텔레 커뮤니케이션 설비 (98/5/EC)
- 케이블카 (2000/9/EC)
- 측량기기 (2004/22/EC)

다. 인증절차

CE 인증절차는 해당제품에 속한 모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EU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적합선언서를 작성하여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는 A 모듈이 가장 일반적이다.

19. 지적재산권

가. 상표권

덴마크 내에서 상표권은 THE TRADEMARK ACT(NO 211 OF JUNE 11,1959)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나,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최초의 출원자에게만 독점적인 상표권이 부여되나 선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표권은 선 사용자에게로 이전이 가능하다. 출원 공고기간은 2 개월이며 갱신 신청 기간은 최초 유효기간 만료 전 1 년,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마크도 등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 년이다.

나. 특허권

PATENT AMENDMENT ACT(1978)가 1978 년 12 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모든 제조업자 및 무역업자는 그들의 발명품(INNOVATION)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TRADE MARK 를 등록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 년으로 출원심사는 특허출원 내용상의 신규성 여부가 검토된다.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3 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특허가 부여된다. 발명품 특허 후 3 년(출원 후 4 년간)이 경과해도 특허 취득 내용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 의장권

1970 년에 제정된 Design Act(218) 의해 의장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로부터 5 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네 번 갱신할 수 있는데 한번 갱신할 때 마다 보호기간은 5 년이다. 모델에 대한 보호 기간은 3 년이며, 두 번 갱신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갱신 시에는 3 년 동안 두 번째 갱신 시에는 4 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다.

라. 저작권

문학작품, 언론보도, 미술품, 영화, TV 및 라디오 방송물, 사진, 음반,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은 1995 년에 제정된 Law on Copyright(395)에 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문학작품, 그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은 물론 사후 70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방송물 및 음반 등은 대중에게 유포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50 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20. 소비자보호제도

식품류 및 의약품의 판매 및 생산에 대한 덴마크의 법은 상당히 까다로우며 공장, 가게 그리고 식당에서 현장검사도 한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약제는 등록 되야 하며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특별히 합격된 회사와 인가된 약국에서만 가능하다.

의약품의 경우 2003 년 여름 이후 제도변경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1) 건강식품(Health food), 2) 생약, 3) 일반약품 등 3 개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등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산품 전반적으로는 종전의 덴마크 국내규정에 의하면 1 년간의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2 년 1 월부로 EU 의 규정을 채택(덴마크법 Law No. 213 of 22 Apr 2002)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내구소비재의 경우 2 년간의 보증기간을 설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매시 하자가 있는 물품은 6 개월 내 신품으로 대체 또는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위(Consumer Complaints Board)내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의 하자제기 및 환불요청에 대해서 매우 신속 원활하게 처리해주도록 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The Trade Council of Denmark

덴마크는 외교부(www.um.dk) 산하에 The Trade Council of Denmark 를 두고 대외 교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The Trade Council of Denmark 는 중소기업 지원, 전시회 참가, 해외 네트워크 개척 등 덴마크 기업의 무역 진흥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소: Trade Council of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iatisk Plads 2, 1448 Copenhagen K, Denmark
- 전화: (+45) 3392-0000
- Fax: (+45) 3254-0533
- e-mail: um@um.dk
- Web: http://www.um.dk/en/menu/TradeAndInvestment/

나. 세 관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12 개 지역에 세관을 두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통관 및 관세 등을 관장하고 있다.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세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코펜하겐지역 세관(Costumes Authorities, Copenhagen Area)

- 주소: Sluseholmen 8, DK-2450 Copenhagen SV.
- 전화: (+45) 7222-1818
- Fax: (+45) 7222-1800
- E-mail: http://www.skat.dk/SKAT.aspx?oID=349105&vID=0 (세관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클릭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보낼 수 있다.)
- Web: www.skat.dk

다. 기타 무역관련 기관

덴마크에는 우리나라 전경련과 같은 기관인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DI)가 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DI)

- 주소: H.C. Andersens Boulevard 18, DK-1787 Copenhagen V.
- 전화: (+45) 3377-3377
- Fax: (+45) 3377-3300
- E-mail: di@di.dk
- WEB: www.di.dk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으로 Danish Chamber of Commerce (HTS)가 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Danish Chamber of Commerce (HTS)

- ○ 주소: Bosen, DK-1217 Copenhagen K.
- ○ 전화: (+45) 7013-1200
- ○ Fax: (+45) 7013 1201
- ○ E-mail: hts@hts.dk
- ○ Web: www.htsi.dk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덴마크의 연간 수입 규모는 2005 년 기준으로 미$745 억 수준으로, 산업구조상 일반소비재 및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0 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기 호황으로 수입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우리의 주종 수출품목인 일반 소비재 시장도 확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덴마크는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하여 화학, 의약, 측정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기술, 발효기술, 시멘트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시장특성

첫째로 소비패턴이 양극화 되어 있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2005 년 기준으로 1 인당 GDP 가 미화 4 만 7 천불대의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생활용품 등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급품 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540 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일부 제품은 덴마크에서 수입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와 독일 등 중부 유럽에도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입량 규모는 크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상거래 형태가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다. 첫 번째 거래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간이 걸리나 일단 거래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로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가전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는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 하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덴마크인들은 환경문제를 하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명되면 당장 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당연히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내어놓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는 비교적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리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한번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 지기 가지는 1년 가까이 소요된다.

다. 한국상품 점유율 및 인지도

덴마크 전체 수입규모는 2005 년 덴마크 수입통계 기준으로 DKK4,475 억(US$745 억불) 규모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DKK42.4 억(US$7.1 억) 정도로서 덴마크 수입시장 점유율이 약 0.9% 정도이다.

한국상품 중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품목으로 자동차가 11% 내외, 핸드폰이 약 13%-14%, 컴퓨터 모니터 및 평면 TV 가 6%-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 경우는 자동차나 전기.전자 제품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 제품에 비해 우수하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 떨어지며, 가격은 개도국 제품보다 조금 비싸나 선진국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산 핸드폰, 평면 TV 등이 최고의 제품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라. 유통구조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통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대형 유통체인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밖에는 도매상이 수입을 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3 단계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독점 수입상이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에게 공급하고 딜러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마. 수출유망품목

1) 가정용전자

덴마크 경제호황으로 소비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붐을 이룬데 이어 금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고기능의 가정용 전자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유망하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MP3, 진공청소기, DVD Players 및 DVD Ram Recorder 등을 들 수 있다.

2) 보안제품

9.11 테러, 런던 폭발물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덴마크와 중동국가간 모하메드 만평 문제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보안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DVR, CCTV 등 보안관련제품의 수출이 유망하다.

3) 자동차부품

신차 판매증가율이 2004 년에 30%, 2005 년에 20% 정도 증가하였고, 국산 차 시장점유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국산 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지 6 년 정도가 되어 본격적인 부품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덴마크 대부분 수입상들이 순정부품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철강제품

건설경기의 호황과 중국산 등 저가 개도국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산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건설기자재

건설경기 호황으로 상업용 빌딩과 주택 신축 및 개.보수로 인한 건설 기자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 덴마크에는 각 제품 또는 산업별 협회가 잘 발달되어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덴마크 협회에 대한 연락 정보는 www.branchelink.dk 에 소개되어 있는데 건설(Byggeri), 에너지 및 환경(Energi og miljø), 금융 및 보험(Finans og forsikring), 소비재(Forbrugerprodukter), 식품(Fødevarer), 산업재 (Industriprodukter), 농수산품(Jordbrug og fiskeri), 문화 및 미디어(Kultur og medier), 공공재(Ofentlig), 서비스 및 IT(Service og IT), 건강(Sundhed), 운송 (Transport) 등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각 산업별 제품에 대한 협회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덴마크 바이어들은 독일 등 인근 유럽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많이 참관을 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가 기업의 디렉토리를 통해 적합한 거래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 한편,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전시회로는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IFF), 허닝 산업전(HI), 허닝 농업박람회(Agromek) 등이 있으며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홈페이지 (www.kotra.or.kr/copenhagen) 전시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인터넷을 통해 덴마크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 알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 Danex Trade Leads Bulletin (www.danex-exm.dk/bboard.html) : 전 세계 주요 거래 알선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오퍼 등록 서비스를 제공
- Danish Exporters (www.danishexporters.dk) : 덴마크의 수출업체 리스트를 제공

○ 이외에도 유럽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European Business Directory (www.europages.com)에는 약 30여 개 유럽 국가들의 업체 정보와 각종 오퍼 정보가 제공되므로 참고해 볼만하다.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비즈니스 언어 및 에티켓

덴마크인들은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므로 비즈니스 언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비즈니스 미팅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상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퇴근시간인 오후 4 시반 이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 이 좋은데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덴마크의 특성상 육아 및 가정 문제를 부부가 서로 분담하여 돕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무자가 매우 중요하다. 덴마크는 다른 유럽에 비해 의사결정 단계가 많지 않다. 대부분 업체의 경우 사장이 있고, 그 밑에 Director 가 있고, 그 다음 바로 실무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단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덴마크 바이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리다. 따라서 끈기를 가지고 접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이 바쁘기 때문에 아주 급하고,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가 드물다.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주 대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하며, 커피도 직접 대접한다. 한 한국업체가 그 동안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덴마크 업체 측에서 공항영접을 나왔었다. 한국업체는 공항영접 나온 사람이 직위가 낮은 줄 알고 함부로 하였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담에 들어가서 바로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날씨, 덴마크에 대한 인상 등 비즈니스 이외의 가벼운 화제로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카드나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도 비즈니스에 매우 도움이 된다. 부담스러운 선물은 곤란하지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카드나 조그만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한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팩스의 경우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거나 스팸메일로 취급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 X 나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의 메일 계정 보다는 회사 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인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펨성 메일 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화된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다. 거래 조건 및 덴마크 바이어들의 특징

덴마크를 인구가 작기 때문에 작은 시장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덴마크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 바이어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경우가 많으므로 스펙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한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컨텍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 까지는 6 개월에서 1 년이 소요된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노동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바쁘다. 따라서 급하거나 충분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회신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접촉 및 협상할 필요가 있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지역과 관련하여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 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 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결제, 딜리버리,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능한 한 덴마크 상사중재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따르도록 하기 보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통관절차

가. 통관 절차

덴마크 기업 또는 개인이 EU 국가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 외의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원산지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종가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종가세를 보완하여 종량세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세율은 EU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세구역

에 보관 중이거나 제 3 국 운송을 위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 25%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담배, 초코렛, 커피 및 차, 비디오 테이프 등의 제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사본, Packing List 가 필요하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하며, 수입허가 품목일 경우는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입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 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하여야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 지고 있다.

세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 기관명: Toldcenter Copenhagen
- 주소: Snorregadesgade 15, DK-2300 Copenhagen S.
- Tel: (+45) 3288 7300
- Fax: (+45) 3295 1874
- Web: www.toldskat.dk

나.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은 물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검사요원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28. 운송

가. 국제공항

1) KASTRUP

코펜하겐 남쪽 10Km 지점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15 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요금은 2006 년 현재 약 DKK250($40) 정도임) 1999 년 초에 공항 증축이 완료되어 북구 최대의 허브 공항이 되었다.

2) BILLUND

JUTLAND 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인근에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LAND 가 위치하고 있다.

3) AARHUS

제 2 대 도시인 AARHUS 외곽에 위치한 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도심까지 40 분 정도 소요된다.

나. 국제항구

1) 국제항

COPENHAGEN, AARHUS, ESBJERG, HELSINGOER, FREDERIKSHAVN

2) 북구와의 교역항

COPENHAGEN, HELSINGEOR, AARHUS, FREDERIKSHAVN

3) 영국과의 교역항

ESBJERG

4) 한국과의 교역

덴마크 COPENHAGEN, AARHUS 또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등 주요 항구를 통한 해상운송이 주로 이용된다.

다. 운송 에이전트

1) Modul Transport A/S

- 주소: Vallensbaekvej 20A, DK-2605 Brondby
- Tel: (+45) 4342 6800
- Fax: (+45) 4342 6658
- E-mail: lasse@modultransport.dk
- Web: www.modultransport.dk
- 담당자: Mr. Lasse Jensen

2) Nordic Consolidators A/S

- 주소: Turbinevej 11, DK-2730 Herlev
- Tel: (+45) 4488 1020
- Fax: (+45) 4488 1021
- Web: www.nordcons.dk
- 담당자: Mr. Jan Carstens

29. 분쟁해결 절차

덴마크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덴마크 상공회의소(Danish Chamber of Commerce, www.hts.dk)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과 1982 년 중재 협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상공회의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 모두가 동 기관을 중재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중재기관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일단 중재기관을 통해 판정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중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에 불복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재는 UNCITRAL(www.uncitral.org)의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며 중재기관은 양 당사자의 클레임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기하여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판정은 대부분 3 명의 판정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 진영은 각 1 명의 판정관을 지정할 수 있다. 덴마크 상공회의소의 중재를 위해서는 분쟁 대상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3 명의 판정관 대신 단 1 명만을 판정관으로 의뢰하기도 한다.

덴마크 상공회의소의 분쟁담당 부서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HTS Interesseorganisationens Voldgift Børsen 1217 København K
  - 전화: +45)7225-5644

만약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거나 분쟁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양 및 무역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Sø-og Handelsnævnet (Maritime and Trade Court)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가능하며, Sø-og Handelsnævnet 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 (Højesteret)에 항소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인 선임 등 법정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0. 유형별 분쟁사례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 분쟁사례는 거의 없으나 종종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역 거래 행위가 발생하여 주위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한국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 대금을 받은 뒤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출 대금을 받은 뒤 주문 물량이 작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낸 뒤 나 몰라라 해결을 피하는 경우,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덴마크가 인구 540 만의 비교적 작은 시장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행위는 금방 동종업계에 소문이나 한국업체의 시장 진출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선진국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외상으로 물건을 수입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도착물품의 하자를 트집잡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등은 발생할 수 있다.

Ⅵ.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동향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2001 년에 DKK514 억에 달하였다가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04 년에는 마이너스 DKK61 억을 기록하였으나 2005 년에 다시 DKK496 억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IMF 기준에 따라 Equity Capital 의 이전은 물론 투자가와 외투기업 사이의 Loan Capital 의 이전까지도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덴마크 투자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유럽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상황이며,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투기업을 보면 대부분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이며, 아시아 및 기타지역의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의 영향도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반면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투자동향을 보면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운송 및 통신분야이며, 다음은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3 개 분야가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높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투자현황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수산업, 원자재	2.9	-1.1	-2.0	-0.4	0.0
빌딩 및 건설	-0.3	-0.8	0.0	1.0	0.0
제조업	14.7	2.5	5.6	3.4	5.8
무역, 호텔, 식당	1.7	9.4	-0.6	-11.8	4.0
운송 및 통신	10.9	5.0	-2.7	-10.5	5.1
금융 및 서비스	20.3	23.7	11.7	8.2	2.3
기타	1.2	4.7	3.8	4.0	32.4
총계	51.4	43.4	15.8	-6.1	49.6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연도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지역별 투자현황

(DKK 십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유럽	42.1	22.2	12.1	0.4	39.1
(독일)	(3.7)	(1.8)	(1.0)	(4.2)	(4.0)
(네덜란드)	(-0.7)	(-2.8)	(-1.9)	(-0.7)	(-2.8)
(프랑스)	(3.0)	(2.1)	(0.1)	(-4.6)	(3.9)
(스웨덴)	(23.7)	(10.1)	(2.9)	(-15.5)	(6.0)
(영국)	(9.9)	(7.5)	(0.1)	(5.2)	(2.3)
(노르웨이)	(1.5)	(0.2)	(1.8)	(4.3)	(2.7)
(스위스)	(1.2)	(3.2)	(1.6)	(2.6)	(6.8)
아시아	1.0	-2.5	0.7	2.0	5.0
(일본)	(0.3)	(0.1)	(0.1)	(0.1)	(0.0)
미주	5.9	22.6	1.5	-18.0	0.3
(미국)	(5.5)	(17.4)	(4.6)	(-17.7)	(-1.6)
(캐나다)	(0.2)	(0.1)	(0.0)	(-0.1)	(1.4)
아프리카	0.3	0.6	0.6	1.3	-0.4
오세아니아	1.9	0.3	0.0	-0.2	-0.2
기타	0.2	0.2	0.9	8.4	5.8
총계	51.4	43.4	15.8	-6.1	49.6

자료원: 덴마크 중앙은행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유치 개념으로 년도 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나. 덴마크 내 주요 외국기업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 업 명
제조업	Siemens(독일, 기계), Statoil(노르웨이, 석유), Nestle(스위스, 식품), MAN (독일, 선박엔진), Royal Shell(화란, 석유)
판매업	Prockter & Gamble(미국, 생활용품), Toyta(일본, 자동차), Loreal(프랑스, 화장품), BASF(독일, 화학), Philips(화란, 전자), Philip Morris(미국,담배), Matsusita(일본, 전자), Eli Lilly(미국, 제약)
서비스 및 금융	DHL(미국, 운송), UPS(미국,운송), Oracle(미국, 소프트웨어), IBM(미국, IT 서비스), GE(미국, 금융), DeutcheBank(독일, 금융), Citybank(미국, 금융)
R&D	Microsoft(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Ferring(스위스, 제약), Siemens(독일, 기계)
유통체인	Lidl(독일, 슈퍼체인), Bodyshop(영국, 미용 및 피부관리), 7 Eleven(미국, 편의점), ToysRus(미국, 완구), IKEA(스웨덴, 가구)

덴마크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을 위해 투자한 유명 외국기업이 많지 않으며, 판매업은 세계 유명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일부는 독일이나 스웨덴 법인에서 덴마크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외국 유명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며, 유통체인은 모두 미국과 유럽계 기업들이라고 보면 된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기업이 덴마크에 투자한 것은 통계상으로 입수 가능한 2006 년 6 월까지 총 6 건에 170 만 4 천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2001 년 이전에 투자된 것이 2 건 10 만 6 천불이며, 그 이후 2003 년에 맥슨전자가 덴마크에 R&D 센터 설립을 위해 투자한 것이 20 만불, 그리고 2006 년에 3 건 139 만 8 천불이 투자되었다.

20001 년 이전에 투자된 2 건의 경우 실체가 정확하지 않으며, 2003 년에 투자한 맥슨전자의 R&D 센터도 모기업인 맥슨전자의 부도로 2005 년 초에 매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않다. 2006 년에 투자한 3 건은 덴마크에 법인을 설립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한 경우라기 보다는 지분투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덴마크에 직접투자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사실상 없는 셈이며, 덴마크에 직접투자 없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선급,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3 개사이다.

우리기업의 대 덴마크 투자현황

(단위: US$천)

구 분	2002 년까지 누계	2003	2004	2005	2006.1-6	총계
투자건수	2	1	0	0	3	6
투자금액	106	200	0	0	1,398	1,70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33.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 향후 5 년간 60 개국의 투자 환경을 평가한 결과,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인 것으로 평가할 정도로 투자환경은 안정되어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이 좋게 평가 된 것은 첫째, 최근에 실시한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제고되었고, 노동자의 교육수준도 한 차원 높아진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주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한 재정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와 국가 채무를 감축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는 세법을 보다 단순화한 조치와 2007 년부터 실시될 지방정부의 개혁조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개혁조치는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덴마크의 금융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강한 은행 분야로 전문화 되었으며, 코펜하겐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또한 세계 최고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운송시스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소재한 질랜드섬과 저틀랜드를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독일까지 연결되고, 또한 코펜하겐과 스웨덴을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덴마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는 물론 중앙 및 동구 유럽국가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EIU 는 인근 EU 국가와 비교할 때도 덴마크가 정치 및 제도적 환경, 국가 경제의 안정성, 비지니스 관련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칙, 인프라 스트럭쳐, 금융부분의 건전성 등 6 개 분야가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나. 외국인투자 장려분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 금지분야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되어 있으나 통신(통신장비 제조는 제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천연가스 배급 업종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아파트 빌딩, 주거용 건물, 농장, 농토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되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특별조건을 두고 있다. 현재 외국은행이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할 경우 초기자본금 또는 등록된 지사의 자본금이 최소 DKK40 백만(5 백만 유로) 되어야만 승인해 주고 있으며, EU 은행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마. 투자허가

외국인이 덴마크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덴마크에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 등록 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회사설립자는 회사 설립 후 6 개월 이내에 회사등록을 위해 Erhvervs og Sels kabsstyrelsen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회사 등록소)에 투자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계약서에는 정관, 회사명, 회사의 위치, 사장의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덴마크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업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8 일 이내에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당국에 등록을 하면 지방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 고유번호(SE 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기업 등록소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위해서 등록된 회계사 또는 국가 공인 회계사를 지명해야 한다. 회계보고서는 주주승인 후 1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허가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호텔경영, 음식점 운영, 외환 환전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별 등록기관 및 제출 서류

업체유형	허가. 설립신청기관	제출서류
현지법인 - A/S: 주식회사 - ApS: 유한회사	Erhvervs og Selskabsstyrelsen (주 1 참조)	법인신청서
Branch Office	Erhvervs og Selskabsstyrelsen	지사설립신청서 (주 2 참조)
연락사무소	신청 및 허가기관 없음(불요함)	없음

ㅇ (주1) Erhvervs og Sels k absstyrelsen (회사등록소)
- 주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화: (+45) 3330 7700
- 팩스: (+45) 3330 7799

ㅇ (주2) 지사설립을 희망하는 한국업체는 우선 덴마크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한국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필요 신청서 양식 >

ㅇ 법인(A/S, ApS) 신청서
- Owners, managers, accounts 리스트, 연락처 작성양식
- Owners, managers, accounts 변경사항 기재양식
- 회사명, 주소, 전화 등 연락처 기재양식
- 자본금 관련사항 기재양식
- 지사설립 신청서

34. 투자인센티브

가. 투자인센티브 개황

덴마크의 투자유치 정책은 내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 한 권리가 부여된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책이 아닌 특정지역 혹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보조는 주로 수출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에 투자하는 산업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하여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나. 투자유치관련 법규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법적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다. 투자우대제도

□ Growth Fund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growth Fund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이다.

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이 유망하지만 아주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은행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이 Fund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연간 매출액이 4 천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250 명 이하인 기업이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총 소요자금의 4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최소 연간 매출액이 4 천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100 명 이하인 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2/3 에서 1/2 까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라. 세제우대

덴마크내의 혹은 덴마크의 특정 지역 내의 외국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우대 제도는 없다.

마. 금융지원

덴마크 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는 없다. 다만 덴마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 금융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덴마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내국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신용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담보융자기관이나 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연금관리회사 및 투자회사를 통하여 장기신용이 가능하다.

35. 타당성조사

덴마크에 투자를 계획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 덴마크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자유무역을 지원한다
- 국유화 정책이 없다.
- 가격과 외환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 현 정부의 정책은 관료적인 간섭의 배제 및 탈 규제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투자가능성 및 제한
-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에 대해 개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덴마크 회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사전 승인 및 등록
- 외국 투자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법인에 투자할 때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

○ 가능한 사업구조
- 외국 투자가들이 덴마크에서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법인 또는 지사이다.
- 은행이나 보험업 및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 선박에 대한 투자는 무한 또는 유한의 파트너쉽이 투자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설립 및 인수
- 덴마크 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 투자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조세감면 혜택은 없다
- 수출과 연계된 인센티브 이용이 가능하다
-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지
- 중앙정부 또는 지방 개발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
- 외국 투자가도 덴마크 내에서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 덴마크에서 영업을 하는 덴마크계 또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크레딧 및 파이낸싱 서비스가 가능하다
- 장기 파이낸싱도 가능하다.

○ 자본금 및 과실 송금
- 외환규제가 없다.
- 자본금이나 과실은 자유스럽게 송금될 수 있다.(세금은 내야 함.)

○ 세금 고려사항
- 법인세는 높지 않다.
- 기본적으로 법인과 지사에 대한 조세는 동일하다.

○ 노동시장 및 인건비
- 노동력은 덴마크 내 대부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 인건비는 수행된 노동의 질 및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다.

○ 시장조사: 직접조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시장조사가 가능하다.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회사(A/S), 유한회사(ApS), 지사(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구분	A/S	ApS	Branch	Representative office
적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의 회사에 적합하며, 덴마크 주식시장에 등록가능	중소규모의 회사에 적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등록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 에 등록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 에 등록 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 에 등록 필요	등록 불요
자본금	최소 DKK500,000	최소 DKK125,000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목적상 본사가 최소 DKK 125,000 이상의 자본금 서류 제출 필요	요구사항 없음
책임	출자주식의 가치 범위 내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외국의 모회사
경영	반드시 최소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소 1 명의 사장이 필요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가능 하며, 양자가 모두 있어도 무방	최소 1 명의 지사장 등록필요	요구사항 없음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지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계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세금	법인세 28%	법인세 28%	덴마크 지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8%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적용법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rivate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적용되는 법 없음

가. 주식회사(A/S)

1)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1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체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자는 정관을 포함한 설립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설립계약서에 서명한 후 6 개월 이내에 회사 등록소(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없다. 회사는 설립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는 의무를 지거나 제 3 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의 목적, 회사 설립지역, 자본금, 이사회 인원수, 회계연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의 2/3 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2)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DKK500,000 이며, 자본금은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명목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사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의 5% 이상 또는 최소 DKK100,000 에 해당하면서 총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그의 주식 소유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어떤 주주가 5% 제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투표권 및 총 주식의 1/3, 2/3 에 달하는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용을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 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5%, 1/3, 2/3 의 제한을 초과하는 주주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며, 이 리스트와 Annual Report 상의 연간 회계정보를 포함한 회사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3) 경영

모든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최소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어진다. 3 년 연속 평균 35 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이사의 절반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사장을(General Manager)를 선임하며, 사장은 이사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으나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이사진의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이 아니어야 한다.

이사회와 함께 사장은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회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되는 일반적인 연례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 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은 4 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4) 연간회계

주식회사는 감사를 받은 회계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회계기록은 최소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해야 하고 Annual Report 도 준비되어야 한다. 회계기록은 덴마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종종 다른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 화폐단위는 덴마크 크로네 또는 유로로 표시되어야 한다.

연간회계 기록이 주주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즉시, 그러나 회계연도 종료 후 4-5 개월 이내에 Annual Report 와 함께 기업등록소에 제출되어서 일반인 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산

청산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주주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청산이 결정되면 주주총회는 1 명 또는 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의 결정은 덴마크 관보를 통해 공고되어야 하며,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유한회사(ApS)

유한회사는 법 및 조세 차원에서 볼 때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회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유동성으로 소규모 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며 설립절차 등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 납입자본금이 최소 DKK125,000
- 자본금이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해서 납입
- 주식이 주식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주식 소유자는 주식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또는 주식 소유자가 되지 않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이 DKK500,000이상인 회사는 주주명단을 공개해야 함.
- 한 명의 주주에 의해 모든 주식이 소유되었다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 주식 소유자의 신분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General Manager) 선임을 안 해도 됨. 경영진은 한 명의 이사, 한 명의 Director, 한 명의 General Manager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관의 변경은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함.
- 자본금의 40% 이상을 잠식할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재 출자 받거나 또는 해산해야 함.
- 유한회사의 회사의 청산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매우 간단함.

다. 지사설립

1) 설립절차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혹은 회사는 덴마크 산업부의 허가 하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비 EU 회원국의 법인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동일 분야의 덴마크 기업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사 명에는 모 회사명 및 출신국가명과 더불어 Filial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사는 기업등록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신청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 모국에 등록된 외국회사명 및 주소, 설립목적, 자본금, 모회사의 법적 형태
- 지사설립 목적, 지사명 및 주소
- 설립된 지사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름, 직위, 주소 등

등록 신청서는 외국회사의 모든 이사 및 지사장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은 변호사 등에 의해서 공증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외국회사의 설립계약서(The formation agreement)와 정관
- 외국회사의 등록증
- 지사장은 거주자로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증명서 및 지사장에게 공증된 위임장

모든 서류는 덴마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기업 등록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덴마크어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비는 없다.

2) 자본구조

외국업체의 덴마크 지사는 자본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경영

최소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을 지사의 Manager 로 선임하여 등록해 한다.

4) 지사폐쇄

지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장기간 지사장이 공석일 경우, 지사는 폐쇄될 수 있다. 회사 등록소에 등록이 취소되면 지사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사장은 소득세, 관세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5) 장부 및 회계기록

지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모회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차 회계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을 회사 등록소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지사의 연간회계기록은 납세신고서와 같이 제출 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법정감사

세법 및 회사법에서는 지사에 대한 회계기록을 감사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지사 설립에 허가가 요구될 경우 산업부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Representative Office

외국회사가 등록 없이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사무소는 분리된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완전히 외국회사를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무소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국회사가 책임을 진다.

마. 투자방식

투자방식으로는 단독투자, 합작투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합작투자와 단독투자를 구분 하여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작투자는 합작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될 뿐이기 때문에 단독투자와 다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형태는 결국 주식회사(A/S) 또는 유한회사(ApS)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작회사 및 유한회사의 법을 적용 받는다.

37. 입지선정

가. 입지조건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동 지역 내 공장부지는 업체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부지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지역인 Glostrup, Bronby, Ballerup 지역이 공장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 생산공장 및 판매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되어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Danfoss 사가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Grunfos 사는 중북부지방, Lego 는 중부지방, Vestas 사는 중서부 지방의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본토의 북부지방인 Aalborg 지역에는 IT 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산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산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대체산업으로 IT 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대학 등의 관련학과 증설, 직업학교과정 확대로 인력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업계 유치한 결과 현재는 덴마크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IT 산업 지역으로 발달했다.

2000 년 코펜하겐-말뫼를 잇는 교량의 완공됨에 따라 동 지역(Oeresund)지역의 경제권이 단일화 되고 있으며, 특히 IT 및 생명공학 관련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어 이를 Medicon valley 로 부르기도 한다.

상기 이외에도 Herning 및 Ikast 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디자인 산업클러스터, Horsens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클러스터, Esbje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묘목산업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산업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 자체 및 정부의 산업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한편 Invest in Denmark 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목적에 맞는 공장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Invest in Denmark 를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vest in Denmark 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기관명: Invest In Denmark
- 주 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 화: (+45) 3546 6000
- 팩 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kd.dk
- Web: www.investindk.dk

나. 산업단지

덴마크에는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없다.

38. 공장설립

덴마크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회사(A/S) 또는 유한회사(ApS)를 설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한 후 개보수하는 형태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두 가지의 승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예외이다. 승인을 받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만 충족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는 공장설립 승인이다. 공장설립 승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Technical Division 이 해주는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 지를 Zoning Law 에 따라 검토한 후 승인을 해준다. 즉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공장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리기간은 통상 6-8 주가 걸리나 대도시 지역은 이 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적은 지역은 덜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승인이다. 이 것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을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지를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회사 등록기관

ㅇ 기관명: Erhvervs og Sels k absstyrelsen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 주 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 화: (+45) 3330 7700
- 팩 스: (+45) 3330 7799
- 이메일: ebst@ebst.dk
- Web : www.ebst.dk

나. 투자지원 정부기관

ㅇ 기관명: Invest In Denmark
- 주 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 화: (+45) 3546 6000
- 팩 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kd.dk
- Web : www.investindk.dk

다. 공장설립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ㅇ 부서명: Byggeri & Bolig 내의 Byggesagsafdelingen
- 주 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vy
- 전 화: (+45) 3366-5200
- 팩 스: (+45) 3366-5200
- E-mail: byggesagsafd@tmf.kk.dk

라. 공장설립을 위한 환경관련 승인기관

공장을 설립 시 환경 관련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ㅇ 부서명: Environmental Division
- 주 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vy
- 전 화: (+45) 4322-2849
- 팩 스: (+45) 4322-2866
- E-mail: aaslyn@tf.kbhamt.dk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회계법인

1) Price Water house Coopers

ㅇ 주 소: Strandvejen 44, DK 2900, Hellerup
ㅇ 전 화: (+45) 39453945
ㅇ 팩 스: (+45) 39453987
ㅇ 이메일: dk-webmaster@pwc.com
ㅇ Web : http://www.pwc.com

2) KPMG

- 주 소: Borups Alle 177, Postboks 250, 2000 Frederiksberg
- 전 화: (+45) 38183000
- 팩 스: (+45) 72293030
- 이메일: kpmg@kpmg.dk
- Web : http://www.kpmg.dk

3) BDO Scanrevision

- 주 소: Kristinebjerg 3, 2100 Copenhagen East
- 전 화: (+45) 39155200
- 팩 스: (+45) 39155201
- 이메일: koebenhavn@bdo.dk
- Web : http://www.bdo.dk

나. 법무법인

1) Jonas Bruun

- 주 소: Bredgade 38, 1260 Copenhagen K
- 전 화: (+45) 3347 8800
- 팩 스: (+45) 3347 8888
- 이메일: jb@jblaw.dk
- Web : http://www.jblaw.dk

2) Kromann Reumert

- 주 소: Sundkrogsgade 5, 2100 Copenhagen Ø
- 전 화: (+45) 70121211
- 팩 스: (+45) 70121311
- 이메일: cph@kromannreumert.com
- Web : http://www.kromannreumert.com

3) Niels Ahlmark(Member of the Law Firm Ret & Raad)

- 주 소: Vester Voldgade 90, 1552 Copenhagen V
- 전 화: (+45) 3315 1563
- 팩 스: (+45) 3313 0707
- 이메일: koebenhavn@ret-raad.dk
- Web : http://www.ret-raad.dk

41. 노무관리

가. 인력

덴마크의 노동인구는 약 280 만 명이며 그 중 150 만 명이 남성이고 130 만 명이 여성이다. 대체적으로 노동인력의 질이 높고, 안정되어 있다. 임금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편인데, 연간 물가상승률이 2%이면, 임금상승률은 3-4% 수준 정도이다.

국립학교를 비롯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이고 산업 근로자는 전문인 양성과정 혹은 기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러 분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훈련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의 수급(ARBEJDFOR-MIDINGEN)을 위해 주어진 지역의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등 노동력의 유동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호황으로 건설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구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노사관계

피고용인-고용주와의 관계는 월급 고용인에 대한 법과 덴마크 고용주연합(DA)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LO) 간에 '73.10.31 일 체결된 주협정문 및 그 후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노사합의 내용을 적용 받는다.

상기 법과 합의내용은 피고용인의 고용은 물론 법정최소 휴가일, 해고통보, 초과근로 수당,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 노동조합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기술 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고용인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가입은 의무적 이지는 않지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특정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 년 또는 3 년, 4 년 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마크 고용주 연합과 덴마크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라. 근로자 평의회

고용주연합과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35 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정보공유와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협력의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마. 피고용인의 이사 선출권

지난 3 년간 평균 35 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의 피고용인은 그들 중 최소 2 명과 대리인 2 명을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

서는 최소 절반 이상의 피고용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사회의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그 회사에 최소한 일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바. 피고용자 Stock Option Scheme

산업근로자의 기업공동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The Tax Assessment Act"는 Stock Option Scheme 이 덴마크 조세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라면 피고용인이 획득한 주식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 근로조건

1) 임금

덴마크에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2005 년 기준으로 사무실 직원의 대졸초임은 월 U$5,047 정도이며, 학력 불문 사무직 비서의 경우 U$ 3,348 정도이다.

부문별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

(단위: DKK)

부문별	일반근로자	간부직	부문별 전직급 평균
농수산업	40,386	56,707	42,997
제조업	30,567	45,585	33,079
도소매, 호텔, 식당	27,261	40,550	28,856
운수, 창고 및 통신	27,687	46,850	29,967
금융중개업	27,986	51,371	36,944
전업종 평균 급여	30,485	44,825	32,354

주: 2005 년 덴마크 통계청 발표자료

2) 수당

많은 회사들이 은행, 보험회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인 연금자금을 마련하여 부가적인 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적합한 식사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식사와 음료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편의 뿐만 아니라 간혹 주거시설도 제공 되어 진다.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회사차량이 지급되어 지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높은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수당은 피고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3) 근무시간

임금근로자의 경우 단체계약에 의해 주당 5 일, 37 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 시간 근무 시 2 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근무 수당의 계산은 첫 3 시간은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에는 100% 지급한다

4) 유급휴가 및 공휴일

모든 피고용인들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 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월급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병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52 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 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 주, 아버지가 2 주를 가질 수 있고, 32 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 주, 출산 후 14 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산후 46 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5) 해고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 6개월 이내 근무직원: 해고 1개월 전 통보
- 6개월- 3년 근무직원: 해고 3개월 전 통보
- 3년- 6년 근무직원: 해고 4개월 전 통보
- 6년- 9년 근무직원: 해고 5개월 전 통보
- 9년 이상 근무직원: 해고 6개월 전 통보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 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 15, 18 년 혹은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되면 부수적으로 1 개월, 2 개월, 3 개월치의 추가월급을 보상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1, 2, 3 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인 및 18 세의 미만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으면 1 개월, 2 개월, 3 개월치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임금근로자 해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임금근로자는 9 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1 일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며, 2 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21 일의 사전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사직통보는 이에 반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6) 기회균등

법령에 의해 인종, 국적, 종교 혹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봉급, 임금 혹은 혜택의 수준이 성별이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달리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동료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7) 보건 및 안전

모든 기업은 근로보건 및 안전법(ARBEJDSMILJOLOVEN)에 근거한 산업보건 및 안전규정, 노사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정요원을 지명하거나 최소한 1 개의 안전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에 피고용인의 근무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와 비위생적인 근로조건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구 부상 및 건강악화를 보상해주는 보상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8) 교육훈련

현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위하여 기본훈련 혹은 고등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과정과 수련인의 시험관리는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기관이나 현지 시당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여러 과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 사회보장

1) 사회보장제도

덴마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연금, 의료 및 아동복지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실업자 및 장애자 복지
- 피고용인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추가연금
- 산업재해 보험
- 공공기금으로 충당하는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s)

2) 보장

피고용인보장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연금 혜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 피고용인을 막론하고 덴마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된다.

3) 기부

사회보장기금의 기부는 주로 정부출자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보장비용도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출자되지는 않는다.

4) 혜택

□ 연금

모든 덴마크 시민은 다른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덴마크 체류기간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금은 65 세가 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99.6.1 이전에 60 세가 된 사람에게는 67 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06 년에는 연간 DKK58,032 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매년 이 금액은 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 1 명에게는 연간 DKK58,416 이 추가로 지급되며, 부부에게는 DKK27,276 이 추가로 지급된다.

모든 피고용인과 근로자 (외국인 포함)는 67 세에 추가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99.6.1 이전에 60 세가 된 사람은 65 세가 된 다음 달부터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연금 이외에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연금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금은 개인이 연금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시기는 65 세부터 이며, 1999.6.1 이전에 60 세가 된 사람은 67 세부터이다. 이 연금은 회사가 복지차원 에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 에서 64 세 사이에서 조기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 세가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수령액 보다 약간 작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퇴직제도에 규정되어 있다.

□ 질병 및 의료비용

1971 년의 봉급 근로자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할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다. 만약 피고용인이 2 주일 이상 질병으로 결근하였음에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2 주 이상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 출산휴가 시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의료 및 치과 비용은 개인의 의사 및 치과의 선택 제한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환불되거나 50% 만 환불 되어 지며 입원은 수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 아동복지

2006 년 기준으로 2 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13,640 을 받을 수 있으며, 3 세부터 6 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12,324 을 받을 수 있고, 7 세부터 17 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DKK9,696 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 금액은 면세로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 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해당 사람이 국가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인지 아닌지의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 공인 실업기금의 회원일 경우 원래 봉급의 90%, 2006 년의 경우 주당 최고 DKK3,207 의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나 회원도 아니며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개인은 거주하는 시청에서 생활보조비가 주어진다.

□ 피고용인 보장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

피고용인 보장기금의 목적은 고용자가 파산할 시 지불되지 못한 보수에 대한 피고용인의 피해를 막는데 있으나 기금은 각 피고용인에게 소득세 후 최고 DKK 90,000 을 지불한다.

5)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CPR CARD(현지주거자 신분증)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은 CPR CARD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니다.

42. 조세제도

가. 세제개황

세금의 종류를 보면 첫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이산화탄소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있고,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자본소득세가 있다. 두번째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VAT), 자동차 등록세, 관세 및 여러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지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또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인에 대한 재산세(법인은 제외함)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자본세(주식양도세, 부유세 등), 지급 급여세 등은 없다.

국세의 충당은 간접세로 39%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약 61%가 직접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주 및 시단위로 부과가 가능하다. 비록 각기 다른 정부기관이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 추징 및 수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업 조세

1)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유럽평균 보다 낮은 28%이다. 법인세는 면세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 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설립기관(예: 지사)을 둔 비거주 외국기업은 매 세무기간 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4 월 1 일에서 12

월 31 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 월 30 일까지 납세신고를 끝내야 하고, 회계연도가 1 월 1 일과 3 월 31 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출은 6 월 30 일 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세무당국은 추정치로 부과한다.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하여 세무당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치 혹은 임의의 세금부과가 이루어진다.

만약 법인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시에는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 주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하여 새로이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에 법인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일로부터 4 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다.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다시 8 주 이내에 국립 세금 재판소(National Tax Tribunal /Landsskatteretten)로 항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 개월 이내에 고등법원 (High Court)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년도 5 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법인세액은 별개의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세무년도 이듬해 11 월 1 일까지이며, 납부가 11 월 20 일을 지나면 안 된다.

2) 이산화탄소세

이산화탄소세는 덴마크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세가 부과된다.

이산화탄소세는 2004 년 1 월 1 일 이전까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채굴된 이산화탄소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70%가 부과되었으나 2004 1 월 1 일 이후에는 52%로 하향조정되었다.

3) 자본소득세

3 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본 소득세가 면제되나 3 년 미만 소유한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법인세와 같이 28%이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소유자는 덴마크 회사의 주식에 대해 덴마크의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간접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80%로 매우 높다.

다.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기업 및 자사의 경우도 법인세, 이산화탄소세, 자본소득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 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28%의 원천 징수세나 조세협정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협정 체결국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로얄티에 대해서는 28%의 로얄티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영구설립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덴마크내의 산업 및 공업 이윤은 과세된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사무소는 직원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활동할 수 있다.

비 거주 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협정에 의해서 덴마크 내에서의 납세의무 정도를 규정하며, 만약 협정이 없다면 OECD 모델 협정과 유사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다. 협정에 의해 국내 영구설립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및 상업이윤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또한 비 거주 회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만 영구설립기관은 거주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대리점이 없는 덴마크 소비자를 위한 재화의 수입은 영구설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덴마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 관련 대리점(Unrelated agent) 및 독점 대리점(Sole agent)이 행하는 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구 설립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판매활동은 영구설립기관으로 간주될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는지 외국에서 이루어 졌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판매계약이 덴마크에서 체결되면 영구 설립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 간접으로 발생된 모든 거래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으로 발생된 소득

- 지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5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사의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를 위해 조정하는 방법은 거주자 회사와 같으나, 소득을 수익공제 항목으로 손금처리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내에서 지사를 통한 무역만을 위한 용도여야 한다.

- 또한 외부 부채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본사로부터 빌린 부채 대한 이자 지급 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 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덴마크 회사로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또한 28%의 원천 징수세 내지는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된다. 주주총회에서 배분된 배당금뿐만 아니라 비밀 배당금 및 파산절차를 밟지 않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지불 그리고 파산절차를 밟는 회사의 역년 이전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조세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 징수세는 확정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과세 방지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덴마크 주식의 판매 혹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득에 대해 보통 덴마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회사간 주식 판매는 덴마크 세무관계상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라. 개인 조세

1) 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전국민은 소득액의 9%(8% 실업기금+1% 특별연금세)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소득에서 기본 감면액(DKK 38,500)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총 세율이 59%를 초과할 수 없다.

ㅇ 국세(State Tax Rates)
- 기초세율(0 - DKK265,000): 5.5%
- 중간세율(DKK265,000 - DKK318,700): 6%
- 고세율(DKK318,700 -): 15%
- 지방세(Local Tax Rates) 평균: 32%

이 밖에 종교세가 1%인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실업기금 및 특별 연금세 9%, 국세와 지방세 59%, 종교세 1% 등 총 6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파견된 고액 연봉자나 과학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3년에 한해 25%의 특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DKK236,900 를 초과(2005 년의 경우)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율은 상속자가 자식, 부모 등 직계일 경우 15%, 상속자가 형제, 자매, 친척 등 기타 관계인 경우 15% 외에 추가로 25%(첫 번째 15% 감면후의 금액에 대해)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세율이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여세는 부부간의 경우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면제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DKK52,700 을 초과하는 금액(2005 년의 경우)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타 관계인 경우 36.25%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재산세

DKK3,040,000 가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1%,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43. 외환관리

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외환규제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별한 외환규제는 없다. 다만 투자가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다.

나. 외국자본 및 기술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DKK100,000 이 넘는 국제송금은 덴마크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 현금구좌

모든 덴마크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구좌를 가질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구좌나 증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하며 다음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 위임
- 해외의 은행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송금에 대한 외환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를 포함하여, 소득의 본국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외국인의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업자를 접촉하여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펜하겐은 임대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최소 2-3 개월 전부터 물색하지 않으면 현지에 도착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바, 현지 도착 전 지인 등을 통해 주택물색을 사전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비 지불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 전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행정절차

주택을 구하고 나면 Kommune 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거주허가증(주한 덴마크대사관 발급), 결혼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등이며 본인 및 가족 모두가 Kommune 관계자와 면담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Kommune 에서 CPR 카드를 발급하여 주며 CPR 카드 발급과 동시에 의료보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증은 신청후 6 주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구좌 개설

CPR 카드가 없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여권과 본국주소만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CPR 카드가 있는 사람은 여권, CPR 카드, 현주소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구좌 개설 시 달러 구좌와 크로나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크로나 구좌 개설 시 Dan Card 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물품대금 지불 및 제세공과금 납부 시 유리하다.

라. 전화신청

덴마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전화라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DKK950, 신규설치의 경우에는 DKK1,650 을 납부해야 하며, Mobile phone 가입 시에는 DKK250 을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3 개월(분기) 단위로 청구된다. 참고로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 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마. 비품구입

현지 상점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영업을 한다.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오후 2 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은 12 월과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주요 상점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NETTO: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지에 가까운 곳에 매장을 많이 갖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 INCO: 이용 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육류, 생선, 채소류, 부엌 음식물 등이 주종을 이루는 도매상가이다.

- METRO: 일반 가정용품, 가전제품 및 부엌음식물 등의 대형매장으로 이용되며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 기타 IRMA, ISO, PRIMA, GOVA, Bilka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가구류는 IKEA, ILVA, IDEA, 개인가구상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매년 1회 Bella Center에서 개최되는 가구전시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바. 자동차구입

덴마크는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가격의 180%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가격이 우리나라의 거의 세배에 달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여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하여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 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 보다 가격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사. 교육

만 7 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9 년간의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며 의무교육 이후 3 년간의 고등학교(인문계 및 실업계) 과정 및 대학과정의 취학이 가능하다.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현지 거주비자 획득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 학교 또는 Int'l School 중 선택이 가능하며 덴마크 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모든 교육은 덴마크어로 진행된다.

3 년 정도 한시적 체류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INT'L SCHOOL 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INT'L SCHOOL 입학은 덴마크에서 거주비자를 (일반인의 경우 CPR CARD, 외교관의 경우 외무성 발급 ID CARD) 획득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의 경우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 서류 제출시 Application Fee 로 DKK2,500 을 내야하며, 등록금으로 DKK22,500 을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수업료만 내면 되는데 2006/2007 학년도 연간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

- Pre-Kindergarten(K1, K2): DKK90,000
- Kindergarten3, 1 학년 : DKK72,000
- 2학년-5학년 (Primary School): DKK72,000
- 6학년-8학년 (Middle School) : DKK75,000
- 9학년 (Middle School): DKK79,000
- 10학년(Senior School): DKK93,000
- 11학년-12학년(Senior School): DKK102,000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명	주 소	전 화	팩 스	E-Mail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CIS)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45)3946 3300	(+45)3961 2230	cis@cisdk.dk

이 밖에도 코펜하겐 인근에 영국계 인터내셔널스쿨이 있으며, 학제는 상기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과 다소 상이하다. 오후스 등 덴마크 내 여타 대도시에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아. 생필품조달

생필품은 주요 슈퍼마켓(Fakta, Super Brugsen, Kvickly, NETTO, Fotex, Bilka, ISO, Mata 등)에서 매우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NETTO 에서 구입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자. 한국식품 조달여건

덴마크는 인근 독일과 달리 한국 식품점이 없어 인근 함부르크의 한국 식품점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계 마켓에서 고추장, 된장, 라면, 참기름,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한국식품 구입이 편리해졌으나 가격은 한국에 비해 3-5 배 정도 비싸고 품질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채소와 과일 등은 터키인,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운영하는 마켓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무 등도 구입이 가능하다.

차. 병원이용 및 의약품 구입

덴마크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 카드를 받게 되면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 신분을 보유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홈닥터를 지정하여 이 의사로부터 1 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바로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의약품 구입은 일반 약품일 경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전문 치료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카. 레저여건

코펜하겐이 위치한 곳은 섬이며, 본토의 경우도 길게 늘어진 반도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바다와 가깝다. 여름이 짧고 기후가 좋지 않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바다 해수욕장은 잘 갖추어져 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산보, 조깅하는 사람이 많으며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 자전거 타기가 매우 용이하다. 전국적으로 약 160 여 개의 골프클럽이 있으나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약 66 불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 골프 클럽내 특정 행사 가 없는 경우 별도의 예약은 불요하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수영장, 베드민트 코트, 스쿼시 코트, 테니스 코트 등이 있어 취미 별로 즐길 수 있다.